

## 제 6장 조선시대의 고성

### -조선왕조실록을 통하여 본 고성

#### 제 1절 개설

『세종실록』(권150, 지리지, 경상도 진주목 고성현)에 의하면 고성(固城)은 본래 소가야국(小伽倻國)이었다. 신라 경덕왕 때 고성군(固城郡)으로 개칭하였고, 고려시대 현(縣)으로 개정하였다. 고려 현종(顯宗) 무오년인 1018년에 고성은 거제(巨濟) 임내(任內)에 소속되었다. 그 후 현령(縣令)을 파견했으며 조선왕조 건국 이후에도 기존의 형태를 유지하였다. 별호(別號)는 철성(鐵城)이라고 하였다. 15세기를 기준으로 『세종실록』의 지리지에 조사된 고성의 인구는 2천 8백 85명이었고, 토질은 비척(肥瘠)이 반반씩이며, 기후는 따뜻한 지역이었다.

본 장에서 다루는 조선시대 고성(固城)에 대한 서술의 시간적 범위는 조선 건국이후부터 대한제국성립(1897)이전까지로 한다. 이 기간 중 선조즉위 25년 4월에 발발(勃發)한 이후 종전(終戰)까지 약 7년간의 임진왜란기는 제외한다.

서술에서 활용되는 주된 기본자료는 『조선왕조실록』의 고성관련 사료들이다. 실록의 고성관련 전체 사례분석에서 나타나는 내용들을 유형별로 분류하면서, 조선시대 고성지역의 상황과 변화과정 및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파악하고자 한다.

#### 제 2절 『조선왕조실록』의 고성관련 기록 상황

『조선왕조실록』은 주지하다시피 조선시대 연구의 기본이 되는 중요한 자료이다. 2010년 고성문화원에서 간행한 『고성사료집(제2권)』은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나는 고성관련 사료들을 추출해 놓은 사료집(史料集)이다. 내용의 오류들을 바로 잡으면서 이 사료집을 토대로 수록된 사료들을 검토하고 분석하면서 고성지역의 상황과 특징들을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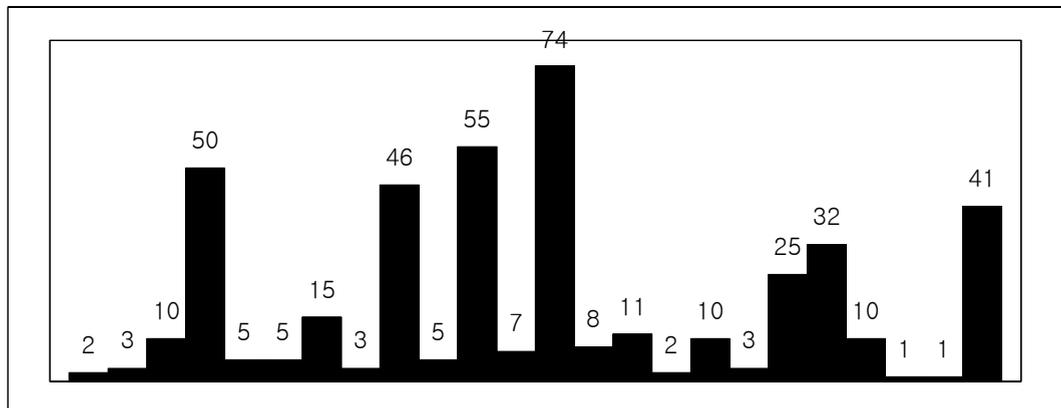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나는 고성관련 기록의 상황은 재구성하여 [별표1]로 본장의 뒷부분에 정리하였다. 별표로 정리한 『조선왕조실록』의 이 기록들은 조선왕조 전체 27명의 국왕들 중 인종·효종·순종의 3시기를 제외한 24명의 재위기에 확인되는 사례들의 요지이다.

『조선왕조실록』은 편년체 사서이므로 일자에 따라서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들을 포함하여, 현상적으로 추출된 고성현 관련 기사들은 『태조실록』으로부터 『고종실록』까지 전체 424건이 나타난다. 이 424건은 태조대가 2건, 정종대가 3건, 태종대가 10건, 세종대가 50건, 문종대가 5건, 단종대가 5건, 세조대가 15건, 예종대가 3건, 성종대가 46건, 연산군대가 5건, 중종대가 55건, 명종대가 7건, 선조대가 74건, 광해군대가 8건, 인조대가 11건, 현종대가 2건, 숙종대가 10건, 경종대가 3건, 영조대가 25건, 정조대가 32건, 순조대가 10건, 헌종대가 1건, 철종대가 1건, 고종대가 41건이다.

추출된 사례들의 횟수는 임진왜란이 발생한 선조 재위시가 74건으로 가장 많다. 『선조실록』에서 임란이 발발하는 선조25년 4월 이전의 사례는 『선조수정실록』을 포함하여 4건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임란이 일어나기 전 조선전기의 사례는 210건으로 전체의 약 49.5%이며, 조선후기의 사례는 214건으로 약 50%이다. 조선후기에서 4건 정도가 많으나, 건수나 비율면에서 보면 조선 전,후기 실록의 고성현 기사 사례는 거의 비슷하다.

이 상황을 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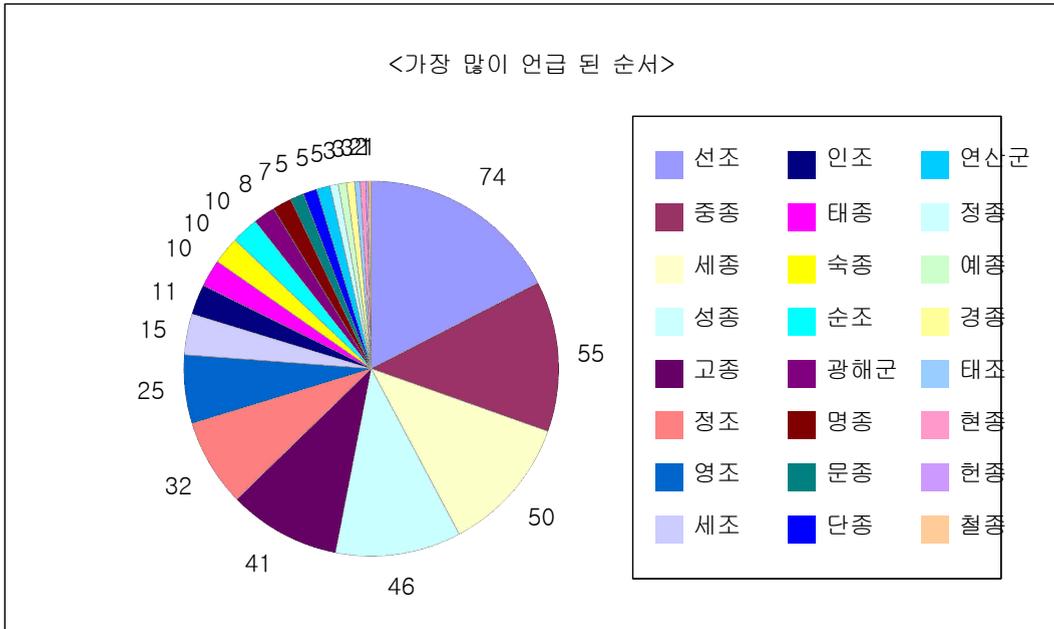
[표 1] 『조선왕조실록』의 고성관련 국왕별 기록 상황(단위 : 건)



조선왕조 총 27명의 국왕 중 인종·효종·순종을 제외한 24명의 왕 재위시에 추출된 기사들에서 최다 횟수는 위에 언급했듯이 74건이 나타나는 선조 때이다. 일본과의 약 7년간의 전쟁을 치르는 특수한 역사적 상황과 연관된다고 본다. 선조 재위기를 선두로 순위는 순차적으로 55건인 중종 재위기, 50건인 세종기, 46건인 성종기, 41건인 고종기, 32건인 정조기, 25건인 영조기, 15건인 세조기, 11건인 인조기, 공동 10건인 태종기·숙종기·순조기, 8건인 광해군기, 7건인 명종기, 공동 5건인 문종기·단종기·연산군기, 공동 3건인 정종기·예종기·경종기, 공동 2건인 태조기·현종기, 끝으로 16위는 공동 1건인 헌종기·철종기이다.

원그래프로 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조선왕조실록』의 고성관련 기록 순위 상황



조선전기에서는 삼포왜란 등이 발생하는 중종 때가 55건으로 최다 확인되고, 강은 양면 외교정책이 시행된 세종 때가 50건, 그리고 성종 때가 46건으로 비교적 사례가 많은 시기이다. 조선후기에서는 임란이 발생한 선조 때가 74건, 지방행정제도 개편 등이 시행되는 고종 때가 41건, 그리고 18세기 정조 때 32건, 영조 때가 25건으로 상대적으로 많이 확인되는 시기이다. 나타나는 국왕별 사례의 정도는 조선시대 역사의 변동 및 국가의 정책 등과 무관하지 않게 고성현의 역사적 상황들이 실록에 등재되어 기록으로 후세에 전해지는 기사들의 외형적 횡수에서도 반영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면 보다 구체적으로 실록에 나타나는 조선시대 전, 후기 고성현의 상황들을 분석해 보자. 이 과정에서 당시 고성현의 모습과 변화되는 상황, 그리고 특징들을 도출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제 3절 조선시대의 고성

#### 1) 조선전기의 고성

조선시대 고성 지역의 전반적인 상황은 우선 『세종실록』의 관련 내용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고성(固城)은 『세종실록』(권150, 지리지, 경상도 진주목 고성현)에 보면 본래 소

가야국(小伽倻國)이었다. 신라가 그 지역을 정복하여 고자군(古自郡)을 설치하고 경덕왕이 고성군(固城郡)으로 개칭하였다. 고려시대 현(縣)으로 고쳐서, 현종 무오년에 거제(巨濟) 임내(任內)에 소속시켰다가 뒤에 현령(縣令)을 두었는데 조선에서도 그대로 따랐다. 다른 호칭으로는 철성(鐵城)이라고 하였다. 조선 후기에 간행된 관찬 인문지리서인 『여지도서(輿地圖書)』에는 고자(古自)·고주(固州)의 별호가 추가 확인된다. 부곡(部曲)이 한 곳으로 곤의(坤義)였으며, 향(鄉)이 2곳인데, 곡산(曲山)과 녹명(鹿鳴)이고, 당시 모두 소멸되고 직촌(直村)이 되었다. 사방 경계는 동쪽으로 거제 견내량(見內梁)까지 40리, 서쪽으로 사천(泗川)까지 26리, 남쪽으로 해안까지 1리, 북쪽으로 진해(鎭海)까지 33리 이다. 조선 전기 고성의 사방 경계는 『여지도서』에 확인되는 조선 후기의 구역과는 다소 상이하다.

15세기를 기준으로 조선 전기 고성의 호구(戶口)는 호는 5백31호이고, 인구는 2천8백85명이며, 군정(軍丁)은 시위군(侍衛軍)이 30명, 영진군(營鎭軍)이 90명, 선군(船軍)이 3백27명이었다. 약 3백년이 지난 18세기 조선 후기 영조(英祖) 때 호적대장에 기록된 고성의 원호(元戶)는 9천4백35호였고, 인구는 4만34명이었다. 그 중 남자는 1만8천6백13명, 여자는 2만1천4백21명이었다. 3백년의 시차를 두고 호구면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토성(土姓)은 이(李)·채(蔡)·박(朴)·김(金)·남(南)의 5개성이었다.

땅은 비옥한 것과 척박한 곳이 서로 반반씩이며, 기후는 따뜻하다. 간전(墾田)이 3천9백41결이다. 수전(水田)인 논이 조금 많다. 논밭의 경작면적은 영조때를 보면 원래 장부에는 한전(旱田)이 2천9백1결92부(負)인데, 각종 명목으로 세금을 면제받은 밭과 묵은 밭 및 여러 가지 이유로 누락된 밭이 1천9백7결2부3속(束)이었고 경작되고 있는 밭은 9백94결89부7속에 불과하였다. 논은 원래의 장부에는 3천3백38결64부5속인데, 역시 각종 명목으로 세금을 면제받은 논과 묵은 논 및 여러 가지 이유로 누락된 논이 9백15결4부9속(束)이었고 경작되고 있는 논은 2천4백23결59부6속이었다. 왕조의 중요한 재정수입원인 전세의 기반이 고성에서도 그다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못한 실정을 보여준다.

토의(土宜)는 벼와 조·콩·보리이고, 토공(土貢)은 꿀·밀(황랍:黃蠟)·포고버섯·송이버섯·작설차·모래무지·건합(乾蛤)·대구·문어·진복(生鮑)·도미(都音魚)·미역·우무(牛毛)·참가사리(細毛)·부래풀(魚膠)·왕대(탕:蕩)·지초(芝草)·종이·칠(漆)·사슴가죽·여우가죽·삼가죽·노루가죽·산달피(山獺皮)였다.

약재(藥材)는 맥문동(麥門冬)과 방풍(防風)이고, 토산(土產)은 녹반(碌礮)이었다. 녹반은 현의 남쪽 주악곶(住岳串)의 바다에 임해 있는 암산(岩山)에서 생산되는데 구워서 만든다. 품질이 좋다. 염소(鹽所)가 2곳으로 모두 현의 북쪽에 있었다.

돌로 축조된 읍성(邑城)은 둘레가 2백 85보이고, 성안에 우물이 4곳이다. 『여지도서』에는 고성 읍성의 둘레는 3천5백24척, 높이는 15척이었고, 4곳의 우물과 2개의 연못이 있다고 하였다. 역(驛)이 3곳으로, 송도(松道)·배둔(背屯)·구허(丘墟)이다. 가배량(加背梁)은 현의 남쪽 34리에 위치하였고, 수군도만호(水軍都萬戶)가 수비와 방어를 담당한다. 지금은 거제 옥포(玉浦)로 옮겼다. 당포(唐浦)는 현의 남쪽 67리에 있었고, 번계만호(樊溪萬戶)의 병선(兵船)이 이곳으로 옮겼다. 번계는 본래 현의 서쪽 33리에 있었다. 사랑(蛇梁)은 현의 남쪽에 있는데 수로(水路)로 70리이다. 구량량만호(仇良梁萬戶)의 병선이 여기로 옮겼다. 구량량은 본래 진주(晋州) 임내(任內)인 각산향(角山鄉)에 있었다. 봉화(烽火)는 5곳이다. 미륵산(彌勒山)봉화는 현의 남쪽에 있다. 동쪽으로 거제 가라산(加羅山)에 응하고 북쪽으로 우산(牛山)에 응한다. 우산(牛山)봉화는 서쪽으로 좌이산(佐耳山)에 응하고 북쪽으로 천왕점(天王岾)에 응한다. 천왕점봉화는 동쪽으로 곡산(曲山)에 응한다. 곡산봉화는 동쪽으로 진해 가을포(加乙浦)에 응한다. 좌이산봉화는 서쪽으로 진주 각산향의 주산(主山)에 응한다.

관음점사(觀音岾祠)는 현의 서쪽에 있었다. 봄과 가을로 수령이 조정의 지시를 받들어 상박도(上樸島)·하박도(下樸島)·옥질도(褥秩島)의 신(神)에게 이 사당에서 제사지낸다. 박도(樸島)는 현의 남쪽에 있는데 수로로 40리이다. 구량량(仇良梁)의 영전선군(營田船軍)이 내왕하면서 농사를 짓는다.

고성의 수령은 주로 종5품으로 제수되는 현령(縣令)이다. 『여지도서』를 보면, 현령을 중심으로 임직(任職)은 좌수(座首) 1인, 별감(別監) 2인, 군관(軍官) 30인, 인리(人吏) 30인, 지인(知印) 10인, 사령(使令) 15명, 관노(官奴) 25명, 관비(官婢) 21명이었다. 공해(公廩)는 객사(客舍)·동헌(東軒)·향사당(鄉射堂)·군관청(軍官廳)·장관청(將官廳)·인리청(人吏廳)이 있었다. 그리고 향교(鄉校)는 관아의 서쪽 5리에 위치하고 있었다.

조선후기 사찬 읍지인 『철성지(鐵城誌)』에는, 고성의 관원으로는 현령(縣令)과 훈도(訓導) 각 1인을 두었고, 고종때 부사(府使)로 승격하였다. 현령은 종5품이고 부사는 3품이다. 임직(任職)은 좌수(座首) 1인, 별감(別監) 2인, 군관(軍官) 30인, 인리(人吏) 40인, 지인(知印) 15인, 사령(使令) 20명, 관노(官奴) 13명, 관비(官婢) 11명이라고 하였는데 임직에 따라 배속된 인원의 차이가 있다.

이처럼 먼저 『세종실록』과 『여지도서』 및 『철성지』를 통해 고성의 연혁·관원·경계·호구·토성·토질과 기후·토산물·읍석성(邑石城)·역(驛)과 봉수(烽燧) 및 주변 요해처 등 전체적인 상황을 알 수 있는데, 보다 구체적으로 조선시대 고성의 상황을 살펴본다.

조선전기의 고성은, 조선시대 실록에서 확인되는 전체 고성의 사례 424건에서 임란이전

까지 기록 즉 태조즉위로부터 선조25년 4월 13일 이전까지 실록의 고성관련 사례들 총 210건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면 6가지 유형들로 분류된다. 먼저 왜구관련 및 군사적 방어대책 내용이 78건으로 가장 많다. 그리고 처벌관련 내용인데 54건이다. 자연현상 관련 내용이 29건, 고성수령 임명 및 선정 관련 내용 12건, 특산물과 기이(奇異) 관련 내용 12건, 기타 25건이다.

분류 형식상 숫자적으로 일부 증감의 가능성은 있을 수 있으나 큰 틀에서 발생 유형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러한 6가지 유형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과정에서 조선전기 고성의 역사적 상황과 특징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조선전기 고성지역의 6가지 유형들은 다음과 같다.

### (1) 왜구관련 및 군사적 방어대책

조선시대 고성지역의 역사적 상황이 어떠한가와 관련하여 왜구관련 사례가 많은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인다. 조선왕조가 선택한 주변 국가들과의 사대와 교린이라는 외교정책 추진과정에서 일본인들에 의해 자행되는 해안 지역 및 그 지역 백성들에 대한 약탈과 국경침범 행위는 조선정부로 하여금 해안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군사적 안보적 방어대책들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주된 요인이었다.

조선왕조 건국이후에도 왜구의 문제는 해소되지 않았다. 고성과 같은 해안변의 고을들에 대한 방어대책과 국가적 안보문제와 연관되어 군제를 개편한다든지 축성을 시행하는 일 등은 그 구체적 대응 방안이었다. 실록의 기록에 실상을 전하지 못한 경우들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되지만, 고성지역에도 이미 태종조에 왜구의 출몰기사가 확인되고 있다. 문종 때에는 고성지역 사람 11명이 우도(牛島)에 가서 해물을 채취하다가 왜적들을 만나 6명이 살해되고 5명은 도망해 돌아왔으며, 세조 때에도 왜적들의 칼에 상처를 입는 피해가 있었다. 이러한 왜적들의 행태는, 3면이 큰 바다이며 여러 섬들로 둘러있어 왜적들이 숨어서 배를 정박하고 고기 잡는다는 구실로 마음대로 노략질을 자행할 수 있었던 고성의 지형적 특징과도 연관이 있었다.

교린외교정책의 일환으로 세종 때는 굶주린 왜인들을 고성과 사천 등지에 정박시켜 구휼토록 해 주었고, 3포를 개항해 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3포를 개항한 이후에도 문제는 해소되지 않았다. 고성의 백성들을 살해하고 옷과 식량들을 약탈해 가는 왜인들을 단속해 달라는 내용으로 대마도 태수(太守)에게 외교문서를 전달하기도 하지만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성종조에서도 왜선(倭船)들이 고성 앞바다 섬들을 다니면서 어선들을 추격하였고, 왜선들이 고성에 매우 가까이 들어와 어선을 타고 있는 백성들과 서로 싸우고 의복과 식량 등을

약탈하여 가버리는 일이 있었다.

조선 전기에서 왜인들에 의해 저질러지는 피해의 사례가 성종조에 상대적으로 많다. 왜구들이 고성의 어민을 칼로 살해하고 심지어는 언덕에 배를 정박하고 어민을 붙잡아 고을에서 부유한 집이 어느 곳인지를 묻고 그 집의 재물을 약탈해 가는 지경이었다. 이렇게 왜인들의 약탈이 많아지자 경연(經筵)에서, 바닷가에서 5리 까지는 백성들이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성종은 논의토록 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왜인들에 의해 나타나는 약탈과 살해 등은 연산군 시기와 중종조에 이르면서 급기야 부산포와 제포가 왜구에서 함락되었다. 이 혼란의 와중에서 왜인들이 자행하는 살해와 약탈·방화 등 3포왜란이 있었고, 고성과 사랑(蛇梁) 등지에 들어와 약탈을 자행하였다. 또한 왜선 20여척이 이른 새벽에 침입해 성(城)을 포위하고 3시간여 전투 끝에 다수의 사상자를 내고 퇴각한 사랑진왜변(蛇梁鎭倭變)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양상들이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 고성지역과 관련하여 왜구들에 의해 나타나는 흐름이다.

해안 연변지역민들을 보호하고 살해와 약탈 등을 자행하는 왜인들에 대한 방어책을 마련하기 위한 군사적 논의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가시적인 정책적 조치들이 시행되었다. 먼저 인사정책이다. 고성과 같은 연해지역 수령들은 문무를 겸비한 자를 임명토록 하는 인사의 기준이 태종 때에 마련되었다. 그후 연변 수령들을 무재(武才)가 있는 자로 임명토록 하면서, 각 고을들을 상긴(上繫)·중긴(中繫)·하긴(下繫)으로 분류하여 고성은 중긴에 배속하여 무재록(武才錄)에 등재되지 않았어도 이재(吏才)와 지략(智略)이 있는 자를 선정하여 임명토록 하였다.

한편 태종 때 관제개편 당시 고성의 현감(縣監)을 현(縣)의 지사(知事)인 지현사(知縣事)로 개정하고 4품 이상으로 제수토록 하였는데 지역의 특수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는 마정(馬政)이다. 즉 목장의 신설과 말(馬)의 경영이었다. 말의 사육은 군사적 측면에서 중요한 사안이었다. 세종 때 고성현의 해평곶(海平串)에 목장을 신설하여 약 4백필의 말을 길렀으며, 세종 21년경에는 9백여필로 증식하는 등 목마장이 운영되고 있었다. 성종 때 전국 우마(牛馬)의 상황을 점검토록 했는데, 고성의 말을상곶(末乙上串)에서도 목마장이 운영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조사에서 말을상곶에는 본래 2백8십4필이었는데 고실(故失)이 5십9필이었고, 해평곶은 7백4십2필이었는데 고실이 1백1필로 보고되어, 점검과 관리를 태만히 하여 많은 망실(亡失)을 초래하는 자는 조사하여 파직토록 하였다. 세종후반기 해평곶에 9백여필에 이르는 상당한 규모의 목마장이 운영되고 있었으며, 망실을 고려하더라도 성종 초기에 고성의 말을상곶과 해평곶에 각각 2백2십여필과 6백4십여필의 군마(軍馬)성격의 목마장이 관리되고 있었다.

다음은 송정(松政)이다. 즉 소나무 벌목을 엄금하고, 나무가 없는 곳은 식재하여 관리와 감독을 하였다. 송목(松木)은 전투와 수송선박인 병선(兵船)을 제조하는 재료였기 때문에 국가적 감독과 관리가 되었다. 세종 후반기,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한 기록에 의하면 고성 현의 조사지역과 관리지역은 다음과 같다. 임포곶(林浦串)·어리도(於里島)·초도(草島)·오비도(吾非島)·곤이도(昆伊島)·상박도(上撲島)·하박도(下撲島)·추도(楸島)·자란도(自亂島)·국정도(國正島)·신이도(申伊島)·노대도(爐大島)·욕지도(欲知島)·두밀도(豆密島)·질법길곶(叱法吉串)·소비포(所非浦)·고반계곶(古反溪串)·행랑암곶(行廊巖串)·미을가조음곶(彌乙加助音串)·고가배량(古加背梁)·안도(鞍島)·종해도(終海島)·심수도(深水島)·개도(介島)·미륵산(彌勒山) 등 25곳이었다.

다음은 군체개편이었다. 전국적인 군사적 방어체계는 군기(軍器)의 점검과 함께 세조 연간에 개편되어 확정 시행되었다. 세조 즉위년에 내지(內地)에도 연해의 요해지(要害地)와 같이 거진(巨鎭)을 설치하여 인근의 고을들을 중익(中翼)과 좌우익(左右翼)에 분속시켰다. 당시 고성은 사천진(泗川鎭)의 좌익으로 편성되었다. 이 체제는 보완되어 세조 3년에 중앙의 5부5위 군제와 함께 전국적으로 55개의 거진체계인 진관체제로 확정되는데, 고성은 창원진(昌原鎭)에 소속되었다.

독진(獨鎭)을 폐지하고 진관(鎭管)을 설치한 것은 병력을 분산하면 전투력이 약화되는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인데, 고성은 왜인들의 거주지와 인접하므로 불의의 사변시 적시에 구원하지 못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고성의 가배량(加背梁)에 다시 독진을 설치하는 논의들이 성종연간에 있었다.

다음은 군액(軍額)의 편성과 점검이다. 즉 인적자원인 군정(軍丁)의 파악과 관리이다. 성종연간에 병조에서 보고한 자료를 보면, 고성은 군사 6백5십4명인데 29명을 감하여 6백2십5명으로 편성하였다. 이러한 편성은 숫자의 많음보다는 정예병 위주로 편성해야 한다는 원칙에서 보완되어 6십5명을 다시 감액하여 5백6십명으로 확정하였다.

다음은 군수(軍需)부분이다. 각 지방의 세곡인 전세(田稅)는 대부분 서울로 납입되었는데 지방은 비축물자의 여유가 없으므로 풍족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납부처를 조정하였다. 성종연간 당시 고성의 군사전세(軍資田稅)는 읍창(邑倉)에 납입토록 하였다.

다음은 설보(設堡) 즉 보(堡)의 설치이다. 군사적 방어시설로서 보의 현황에 대한 성종 때의 보고를 보면, 고성 사량(蛇梁)에 보를 설치한 곳은 남향으로 둘레가 1천8백5십척이고, 동서의 길이가 5백1십척, 남북의 넓이가 4백3십6척이었다. 보 내에 물이 나오는 샘이 2곳이고, 이곳으로부터 북으로 고성현까지는 수로로 5십5리이고 동으로 당포(唐浦)까지는 수로로 2척(息)이고 북으로 소을비포(所乙非浦)까지는 수로로 4십리이고 서쪽으로 적량(赤

梁)까지는 수로로 2척이었다. 당시 당포(唐浦)와 조라포(助羅浦)·옥포(玉浦) 등 주변 지역 보(堡)의 현황에 대해서도 자세한 현장상황의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고성지역의 보에 대한 논의는 연산군조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었고 동시에 봉화대(烽火臺)의 점검과 축조에 대한 의견도 제기되었다.

끝으로 축성과 관련된 사항이다. 고성읍성은 세종후반기에 축성되기 시작하여 문종즉위 초에 완공되었다. 즉 세종 24년, 고성과 같은 바다와 가장 근접한 고을들은 방어가 긴급한 지역인데 읍성이 축조되지 않았으므로 신속히 축성하도록 하였다. 그 후 문종1년에 3남 도체찰사(都體察使)인 정분(鄭芑)의 보고를 통해 고성읍성이 완공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고성읍성은 둘레가 3천1십1척, 높이가 12척, 여장(女牆)의 높이는 2척, 적대(敵臺)가 12개, 문(門)이 3개, 옹성(擁城)이 있으며, 여장이 5백7십5개이고 성안에 우물이 4개가 있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여지도서』에는 고성읍성의 둘레가 3천5백24척, 높이는 15척으로 나타나는데 다소의 차이가 있다.

지역에 따라 읍성들에 대한 개축과 수축작업이 있었으며, 고성읍성은 해자(海子)를 파지 않았기 때문에, 단종 때 해자를 파도록 하는 보완작업이 진행되었다. 세조 때는 고성읍성을 지킬 군사를 뽑아 읍성에서 방어로써 해상을 통한 불의의 사태에 대비토록 하였다.

조선전기 고성지역에는 왜인들에 의해 자행되는 각종 불법적인 행위들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왜적들을 방어하고 지역민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논의되고 시행되고 있었다. 그것은 수령의 요건에 대한 것·군마에 대한 것·소나무에 대한 것·군제개편·군액의 편성·군수(軍需)방안·보(堡)와 봉화대의 설치와 점검·성곽의 축조 등으로 구체화되고 있었다.

## (2) 처벌관련

조선시대 전기 고성지역과 관련하여 두 번째 유형으로 분류한 처벌관련 내용은 크게 두 개의 양상으로 정리된다. 하나는 법적인, 정치적인 처벌을 받아 고성으로 형벌을 받아 오는 경우이다. 또 하나는 고성지역민이거나 지역관리로 처벌을 받는 경우이다. 전자는, 고성이 조선시대 귀양지 즉 유배처로 기능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서울과 지리적으로 먼 곳이었기 때문에, 중앙의 정치적 사건에 연루되었거나, 전투에서 패전한 장수의 문책, 직무비리와 회계부정으로 인한 처벌, 모친상 중에 불륜을 저지른 자의 처벌, 모반연루자 등이 사안에 따라 고성현의 관노로 영속된다든지, 유배지가 되었다.

후자는, 고성현령과 관련한 직무태만에 따른 처벌과 교체 요청, 가림주구로 인한 처벌

등과 축성공사 군인들을 지체하여 보낸 고성현 판사(判事)를 처벌하는 경우, 청렴하지 못한 평판이 있는 고성현 지사(知事)를 교체한 경우, 고성사람으로 강도죄를 범한 자들의 처벌, 성중 때는 고성현 백성 5십여 명이 신역을 피해 도망하여 진주와 사천 주변에 살다가 체포하러 온 관리들에 저항하다 가중처벌된 사례 등이다. 이러한 두가지 양상 이외 부적격자를 고성현령으로 추천한 인사와 관련한 대간의 탄핵사안 등도 해당된다.

### (3) 자연현상 관련

조선시대 전기 고성지역에 나타난 자연현상과 재해 상황은 하늘과 지상과 바다에서 발생하고 있었다. 먼저 정종(定宗) 때 천구성(天狗星)이 고성현에 떨어졌는데 핏빛과 같은 붉은 바닷물이 솟아올랐다는 유성(流星)에 대한 기록이다. 나머지는 대부분 중종(中宗) 연간에 일어난 자연현상과 재해들인데, 큰 뇌성과 적백색의 연기가 일어난 일, 여름철 태풍으로 짐작되는 큰 바람과 폭우가 내려 풍채와 수재를 겪는 일, 백색충이 생겨 벼작물이 손상된 일, 작황이 좋지 않아 실농(失農)한 흉황에 대한 것, 천둥과 소나기, 특히 중종 39년에는 전염병인 여역(癘疫)이 발생하여 1백여 명의 고성백성들이 사망한 사실 등이다. 이러한 벼백충과 우박, 수재의 현상들은 명종과 임란전 선조조에도 간헐적으로 기록에 나타난다.

지진(地震)은 세종과 세조시기 그리고 중종과 명종시기에 발생하여, 중종 때는 미세한 천둥소리가 나면서 가옥이 흔들리는 진동도 있었다.

바다 해수면의 자연현상으로는 정종(定宗) 때 적조현상으로 어류들이 패사하였고, 태종 때는 해수가 황흑색(黃黑色)으로 변하여 어류들이 많이 죽었다. 해수현상은 기록의 횟수는 많지 않고 조선 초기에 해당한다. 이러한 자연현상과 재변에 대응하여 한편으론 제사의례에 관한 규정을 자세하게 정리하기도 하였다. 세종조에서는 전국각지의 영험처에서 지내는 제의에 대한 건의가 있었고, 고성현의 상박도·하박도·옥질도의 제사 설단(設壇) 등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중종 때는 연속된 흉년과 가뭄으로 단비가 내리기를 바라는 기우제를 고성의 용수암(龍水巖)과 벽산(碧山)에서 시행토록 하면서, 한재를 극복하고 백성들의 생활이 조금이나마 개선되기를 국가적으로 염원하였다.

### (4) 고성수령 임명 및 선정 관련

조선시대의 향촌사회는 고려시대 이족(吏族)주도의 사회구조와는 차이가 있다. 조선왕조는 사족(士族)들이 주도하는 시대이고, 고을수령들은 건국초부터 양반의 신분으로 임명되어 각 고을의 군현에 파견되었다. 임소로 출발하기에 앞서 국왕들은 수령들을 인견하여 그들을 격려하고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당부한다. 수령7사가 있는데, 농상(農桑)을

권장하고 세금의 공정한 징수와 어려운 백성들에 대한 구호, 애민(愛民) 등은 특히 강조되었다. 세종 때 이원손(李元孫)·황혁(黃赫) 등이 고성현 지사(知事)로 임명되어 부임지로 출발하기 전 면대하여 당부하는 내용도 같은 맥락이다. 성종 때 이지치(李知恥)의 고성현령 이임(移任) 기사, 고성현령으로 임명되어 출발하기 전 인견(引見)하는 이귀미(李貴美)·하형산(河荊山)의 기사 등도 동일한 사례이다,

다음은 승진과 포상 등에 대한 기록이다. 세조 때 최유림(崔有臨)이 고성현감에서 의금부 진무(鎭撫)로 옮긴지 수년이 안되어 당상관이 된 기사이다. 현감은 대개 중6품직인데 당상관은 정3품 통정대부 이상이니 빠른 승진이였다. 중종 때 고성현령 최환(崔煥)은 행정 업무에 능통하고 사리분별이 명석하며 요역과 부세를 가볍게 하고 기민(飢民)을 구제하는 등 백성들이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한 공로를 표창하여 벼슬의 품계를 높여 주었다. 선정에 대한 포상이라고 할 수 있다.

명종 때는 고성 진무(鎭撫)인 이세응(李世應)의 효행에 대한 포상으로 부세를 면제해 주는 복호(復戶)가 있었고, 중종 때 고성에 거주하는 유학(幼學) 노필(盧璣)이 효행과 학식으로 추천되었으며, 중종 때 고성사람 안중손(安中孫)이 빈궁한 처지에서도 주경야독하면서 성실하게 생활함에 대한 평가 등이 확인된다.

### (5) 특산물 및 특이사례

조선시대 고성의 특산물은 앞에서 일부 언급했듯이, 『세종실록』(권150, 지리지, 경상도 진주목 고성현)에도 확인된다. 고성의 토산(土產)은 녹반(礪礬)이었다. 녹반은 현의 남쪽 주악곶(住岳串)의 바다에 임해 있는 암산(岩山)에서 생산되는데 구워서 만들며, 품질이 좋다고 평가되었다. 세종 때 경상도 채방별감(採訪別監) 백환(白環)이 고성에서 생산된 백토(白土)를 구워 녹반(礪礬) 1십5근을 만들어 진상하였고, 토질이 우수하므로 구워서 소출되는 염초(焰硝)에 대하여 보고하였다. 문종 때도 염초를 구워 내도록 한 사실이 확인된다. 세종 때는 고성지역의 동철(銅鐵)의 제련에 대하여 효율성을 시험토록 하였다.

중종 후반기에 이르면 고성의 녹반과 철물(鐵物)이 예전에는 산출되었으나 당시는 생산이 단절되고 있었다. 그러나 지역 특산물로 고성 공안(貢案)에 기입되어 국가에 진상해야 할 물품이었기 때문에, 진상에 따른 폐해가 많으므로 녹반과 철물에 대한 개정안이 거론된 정황을 짐작할 수 있으나 전례에 따라 시행된 듯하다.

다음은 특이한 사례들이다. 세종 때 양인신분인 신백정(新白丁)의 처(妻)가 2남1여의 세쌍둥이를 출산하였고, 김경(金敬)의 처가 세쌍둥이 아들을 출산하였다. 중종 때는 봄철이 아닌 가을에 배나무 꽃이 만개하고 앵두나무가 발화하였다. 선조 때는 고성현의 산속에서

흰 꿩이 나온 일 등이 임란이 발생하기 전 실록의 기록에 나타나는 고성지역의 기이(奇異)한 사례들이다.

## (6) 기타

기타의 사례들은 고성 출신자와 고성관련자들의 졸기(卒記), 성종 때 제주도 사람들의 다수가 고성과 사천 등지에 와서 거주하고 있는 실상, 중종 때 가덕도(加德島) 축성시 폭우로 군선(軍船)이 난파되면서 많은 희생이 발생한 사건의 조사를 하기 위해 생환군인들을 고성에 구류(拘留)한 일이 있었다. 그리고 태종 때 사원에 대한 대대적인 혁파가 진행되면서 한편으로는 혁파된 사원들을 대신하고 승도들의 거주처를 만들어 주기 위하여 전국의 사찰들을 종파에 따라 선정하여 명찰(名刹)로 지정하였는데, 중신종(中神宗)에 속하는 고성의 법천사(法泉寺)가 선정되었다.

세종 때는 고성의 송도역(松道驛)에서 거제현까지 7십리의 원거리임으로 거제현의 오양역(烏壤驛)을 복립(復立)하였다. 그리고 공법(貢法)의 제정과 시행의 과정에서 전제(田制)의 상정(詳定) 및 개정과 관련하여 전제상정소(田制詳定所)의 논의가 있었다. 그리고 성종 때 예전에 목마장(牧馬場)이었던 가조도(加造島)에 저도(猪島)의 염소를 옮겨 방목토록 한 일 등이다.

## 2) 조선후기의 고성

조선후기의 고성은, 실록의 이 시기의 사례 전체 214건 중에서 약 7년간의 임란기 48건을 제외한 실록의 고성관련 사례들 총 166건을 중심으로 분석해 본다.

선조 재위기에서 확인되는 총 74건 중에서 임진왜란기인 선조 25년 4월 이후 일본과의 전란이 사실상 종결되는, 통제사(統制使) 이순신(李舜臣)의 전사사실 등을 기록하여 보고하는 좌의정(左議政) 이덕형(李德馨)의 치계문(馳啓文)이 올라오는 선조 31년 11월 27일자를 기준으로 이전의 임란기에 나타나는 선조실록의 41건과 선조수정실록의 7건, 합 48건은 제외한다. 임란이 발발하기전의 사례 4건과 임란기의 48건은 제외하고 조선후기의 선조 시기는 22건을 대상으로 분석한다.

실록의 고성관련 사례들 166건을 분석해 보면 8가지 유형들로 분류된다. 조선 전기와는 달리 후기 고성지역에서는 유형상 처벌관련 내용이 54건으로 가장 많다. 고성백성들의 처지와 구휼 및 창고 관련 32건, 고성수령 임명 및 선정 포상관련 20건, 군사적 방어 관련 내용이 20건, 지방 행정제도와 행정구역 개편 관련이 18건, 자연현상과 재해 관련 9건, 기이(奇異) 관련 내용 5건, 기타 8건이다. 분류의 과정에서 일부유형의 증감의 개연성은 있

을 수 있으나, 이 8가지 유형들 속에서 조선후기 고성지역의 역사적 상황과 특징들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8가지 유형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처벌관련

조선시대 후기 고성지역에 나타나는 처벌관련 내용은 조선 전기와 동일한 건수이며, 겹으로 나타나는 형태상 유사한 양상으로 확인된다. 법적인, 정치적인 처벌을 받아 고성으로 형벌을 받아 오는 경우로 고성이 유배장소로 기능하고 있었음은 조선후기에서도 지속되는 현상이다. 법적인 처벌을 받는 경우가 아니어도 대체로 중앙관료들은 풍토병 등을 염려하여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바닷가인 고성 지역에 부임하는 것을 꺼려하기도 하였다. 실제로 숙종 때 중앙관료로서 시의적절하지 못한 내용의 상소를 올린 것이 문제가 되어 경책한다는 의미에서 좌천의 형식으로 고성현령으로 발령을 내린 사례도 있다. 영남의 변방인 고성으로 유배를 받는 경우는 봉당과 관련하여 주로 정치적 사건에 연루되었거나 당시 사학(邪學)으로 규정한 천주교와도 관련되었다.

16세기 후반에 해당하는 선조 8년, 동인과 서인으로 분열된 동서분당이후 봉당의 갈등과 대립 구조는 그 후 19세기까지 조선후기 사회를 관통하는 주된 흐름이었다. 봉당의 대립구조는 17세기 숙종 연간에 이르러 초기봉당의 건전성이 변질되면서 치열한 정쟁의 형태로 나타났다. 상대당을 용납하지 못하는 숙청의 형태로 진행되면서 정책과 이념의 차이에서 오는 긍정성이 붕괴되고 권력 장악의 경향을 그대로 보여주는 권력투쟁적 정쟁의 형태로 변질되면서 다수의 처벌자들이 양산되었다. 조선후기 정치적 처벌의 경우는 주로 봉당간의 치열한 다툼과정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숙종 19년 고성에 유배 중이었던 전 좌의정 조사석(趙師錫)이 적소(謫所)인 고성에서 세상을 떠났다. 조사석의 졸기(卒記) 중에는, ‘뒤에 왕비의 지위가 변화된 것도 실제로 그에게서 비롯되었고 그 일에 대하여 심적으로 스스로 편안하지 못하여 전날의 허물을 속죄하려고 몰래 알선하다가 흉당(凶黨)에게 발각되어 고성으로 유배’ 되었다는 기록의 이면에는 숙종 연간의 치열했던 봉당간의 다툼이 있었던 것이다. 즉 숙종 6년의 경신환국 이후 왕비의 교체 및 복위와 관련된 비교적 짧은 시차를 두고 연속된 숙종 15년의 기사환국 및 숙종 20년의 갑술환국이라는 남인(南人)과 서인(西人)과의 집권 봉당의 교체선상에서 이해된다.

서울에서 처벌을 받아 고성으로 유배를 오는 경우는 광해군·숙종·경종·영조·정조·순조·고종시기에 확인된다.

이들에 대한 처벌의 형태는 유배가 주류이지만 경우에 따라 위리안치(圍籬安置)하기도 하였고, 고성현의 노(奴)가 되는 보다 무거운 형태도 있었다. 또한 고성현의 관노(官奴)가

된 죄인을 육지에서 축출하여 섬인 제주로 이배(移配)한 영조 때의 사례와 유배지인 고성에서 외딴 섬인 절도(絶島)로 이배한, 모두 가중처벌의 의미를 갖는 정조 때의 경우도 있다. 이와는 반대로 섬인 거제에서 고성으로 이배한 경우도 영조 때 있었다.

정조(正祖)가 세상을 떠난 뒤 19세기에는 집권 서인의 노론세력들이 주도하는 사학(邪學)사건이 발생한다. 천주교신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체포와 처벌이 진행되었다. 성리학을 정치와 사상과 교육의 핵심이념으로 삼았던 조선왕조에서 성리학의 사상과 가치를 부정하는 학문과 신앙은 철저히 탄압의 대상이 되었다. 조선왕조에서 주로 임란 이후 비공식적으로 수용되고 유포되었던 서학(西學)인 천주교에 대한 금압과 처벌은 성리학적 정치와 사회 신분질서를 유지한다는 측면에서는 명분과 타당성이 있었으나 19세기 이후 탄압의 성격은 대원군집권기에 일어난 대규모의 탄압과는 성격을 달리한다. 정조 재위 24년간, 집권 노론(老論) 정치세력들은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온존하고 있었다. 이들에 대한 대응 세력의 확보와 상호간의 견제를 통한 국왕권의 안정과 확립은 정조의 국정운영의 기본방향이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성장한 경기도지역을 중심한 남인들이 정조 사후 대거 탄압의 표적이 되고 있었다는 측면에서 사학사건은 성리학이라는 사상적 성격뿐만 아니라 반대정치 세력들에 대한 처벌과 제거라는 강한 정치적 성향과 의도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19세기 사학사건의 역사적 배경에 대한 설명이 다소 장황한 듯하지만 19세기의 역사적 상황이, 전반기는 이른바 세도정치가 6십여 년간 진행되었다. 그 후 10년간의 대원군집권과 개혁정치 그리고 쇄국과 개국의 갈등과 혼란 속에서 명성황후 집권기에 타의적으로 문호가 개방되는 후반기의 근대화 과정으로 이어진다. 후반기는 일본을 선두로 제국주의 열강들의 진출 속에서 일제강점기인 식민지의 전단계라는 끈질긴 일제의 침략의 과정을 경험한다. 역사의 어느 시기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없겠지만 그야말로 19세기는 희비와 명암이 교차하고 부침(浮沈)이 반복된 다사다난한 기간이었다. 이러한 배경과 흐름의 영향은 당시 고성지역과도 무관하지 않았다.

순조 1년, 천주교 관련자들이 다시 대거 체포되어 처벌을 받으면서 운봉현(雲峯縣)에 유배 중이었던 신여권(申與權)은 고성현으로 옮겨 유배되었다. 이들은 ‘사학죄인(邪學罪人)’으로 지칭되어 처벌받았다. 당시 장기현(長鬐縣)에 유배 중이었던 정약용(丁若鏞)도 황사영(黃嗣永)의 서찰사건과의 연루여부를 조사받고 유배처를 옮겨 강진(康津)으로 이배하였다.

고종 때는 과거시험의 감독관이었던 정원하(鄭元夏)가 고성현에 유배되었다. 주지하듯이 과거(科擧)제도는 법에 의해 과거시험이 시행된 10세기 고려왕조의 광종(光宗) 이후 19세기 후반 갑오개혁으로 혁파될 때까지 9백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유지되고 운영되었던

출사(出仕)의 대표적인 시험제도였다. 고종(高宗) 17년이던 비교적 역파가 가까운 시점이 고 과거시험운영과 시험장에서의 여러 부정이 많았던 실정을 고려하면, 감독관으로서 처벌 받아 고성에 유배된 배경을 짐작할 수 있다.

다음은 고성지역 관리이거나 지역민으로 처벌을 받는 경우이다. 주로 고성현령과 관련한 처벌이다. 조선왕조 전기는 역성혁명에 의한 왕조의 교체가 이루어진 후 성리학적 체계로 각종제도들이 정비되면서, 국정운영에 관한 뚜렷한 국가관을 지닌 국왕들의 주도와 건국을 주도한 집권사대부들의 의욕과 참신성에 토대하여 15세기를 중심으로 안정기를 보여 주었다. 그러나 15세기 후반 이후 신권(臣權)이 확대되는 시점에서부터 거둬진 사회가 연속되고 4차례의 사회의 과정에서 집권훈구파들이 도태되면서 사림파들이 중앙정계를 장악하는 정치세력의 교체가 있었다. 사림파들이 집권세력이 되면서 자체의 분열현상인 붕당상황이 16세기 이후 전개된다. 이른바 사림정치기라 할 수 있다. 17세기~18세기는 붕당의 지속과정에서 벌열(閥閥)들이 주도하는 정치가 진행되었고, 19세기 전반기는 소위 세도정치가 나타났다.

조선후기에 이르면 이러한 중앙정치의 권력집약화 현상이 시간의 경과와 함께 심화되면서 세도정치를 중심으로 매관매직과 탐관오리가 속출하였고, 상대적으로 백성들의 생활상은 더욱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된다. 조선후기 고성지역 수령들의 처벌사례가 많은 배경은 이러한 역사의 전개현상과 맞물려 있다.

약 7년간의 왜란이 종결된 후 선조 39년 7월에는, 고성현령인 이언선(李彦善)이 임진왜란 때 의병장으로 활동한 김언륜(金彦倫)의 공적과 왜군으로부터 노획한 재물을 차지하였고 게다가 그를 모함하여 살해한 사건이 있었다. 이언선은 사헌부의 요청에 의해 관직이 박탈되고 문적에서 삭제되는 삭거사판(削去仕版)의 처벌을 받았다. 동왕 동년 12월, 고성현령 조형도(趙亨道)는 부임한지가 오래 되지도 않았는데 ‘전사비기(專事肥己)’ 즉 오로지 사적인 이익만을 챙겨 백성들이 피해를 받고 있으므로 파직되었다. 일본과의 전쟁 후 고성과 같은 해안지역은 전란의 상처와 피해가 가혹한 것이었다. 실록의 기록에서도 당시 고성현은 이루 말할 수 없도록 잔폐되어 능히 수습할 수조차 없는 실정이었음을 고려한다면 수습과 위무로 선정을 하지 않고 사익을 챙기기에 급급한 연이은 고성수령들의 파행은 지역민들에게는 이중의 고통이었을 것이다.

한편 선조 40년 6월에는 통영 관하의 사람들로 바다를 건너 무역을 할 목적으로, 통제사(統制使)가 사익을 위해 허위로 작성해 준 공문을 가지고 공용선박인 무곡선(貿穀船)을 이용하여 가다가 표류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에 대하여 경상도 좌수사(左水使)인 최강(崔綱)의 조사보고는 이들을 비호하는 내용이었으므로, 공사(公私)를 분별하지 않고 변장들이

비법적으로 비호하는 행태를 경계하기 위하여 통제사의 국문(鞫問)과 최강의 파직을 요청하였다. 당시 이들을 압송하여 국문은 하지 말고 모두 파직하고 조사토록 하였다. 다음날 사간원에서 최강의 국문을 요청하였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선조가 승하하고 7월 광해군이 즉위한 초에, 최강은 현직 별장(別將)으로 안보적 방호(防護)를 신중히 하지 않았고 고을 수령인 이현영(李顯英)도 책임이 있으니 이들을 국문해야 한다는 사간원의 요청에 대하여 승인하였다. 그 후 광해군 5년 5월 최강은 재판을 받고 특별히 나쁜 의도가 발견되지 않아 6월 석방되면서 이 사건은 종결되었다.

광해군 때의 고성현령인 최급(崔岌)은, 오로지 사익만을 일삼아 수탈이 날로 심한 실태를 지적하면서 사헌부에서 그의 파직을 요청하였다. 선조 때의 고성현령이었던 조형도(趙亨道)와 같은 이유였으나 이때는 검토하겠다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그로부터 약 10개월 뒤 고성현령 최급이 군기(軍器)를 특별히 준비했다는 이유로 시상(施賞)을 요청하는 경상도 감사(監司)의 글이 보고되는데, 그간에 그의 대처가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숙종 때의 고성현령이었던 이태현(李泰顯)은 수령 부임전 재직 중일 때 많은 수량의 관곡(官穀)을 사적으로 남용(濫用)하고 이 일이 인사이동과정에서 문제가 되자 대신 돈으로 보충한 그의 행실을 사헌부에서 지적하고 그의 파직을 요청하여 그는 고성현령에서 파직되었다.

18세기 영조(英祖)는 조선 국왕들 중 최장기 재위기간을 가지는 왕이다. 그의 약 52년간 이라는, 반세기가 넘는 재위기간도 길지만 이 기간에 고성현령에 대한 처벌사례도 가장 많이 확인된다. 영조 5년에 고성현령의 교체를 국왕에게 요청한 사헌부의 판단은, 고성현령인 신월(申鉞)이 본래 천열(賤孽)출신으로 경력이 전혀 없으며 사람됨이 용렬하여 한 고을을 전담하여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동왕 6년에는 사헌부에서 고성현감 이만흥(李萬興)의 교체를 요청하였는데, 전년도 고성현령 교체요청 사유와 거의 유사한 이유였다. 이 사헌부의 요청들은 모두 수용되지 않았다.

동왕 8년 6월에는 사헌부에서, 고성은 다스리기 어려운 고을인데 이봉명(李鳳鳴)과 같은 어리석고 무식한 자에게 수령의 직임을 맡기는 것은 옳지 않으니 마땅히 파직하고 인사담당기관에도 주의조치를 하도록 요청하였다. 역시 수령의 자질을 문제 삼은 것인데, 요청한 사안은 시행토록 하겠다는 비답(批答)이 있었으므로 사헌부의 요청대로 처리된 것으로 추정된다.

동왕 18년에는 홍문관인 옥당(玉堂)에서 고성현령 이하연(李夏演)의 교체를 요청하였는데 그 이유는 잔열(殘劣)하다는 역시 자질문제였다. 동왕 22년에는 전(前)고성현감 신사민(申思民)을 안주목(安州牧)으로 유배하여 5년간 금고(禁錮)형으로 처벌하였는데 그 이유는

관곡(官穀)을 유용한 사실 때문이었다. 동왕 25년에는 사헌부에서 고성현령 이희춘(李熙春)의 교체를 요청하였다. 교체요청의 사유는 그의 능력부족과 자질문제였다. 동왕 38년에는 암행어사의 조사보고에 따라 고성현령 정운계(鄭雲濟)를 파직(罷職)하고 체포하도록 하였다. 업무처리를 제대로 잘 살펴 처리하지 못한 능력문제 때문이었다.

동왕 48년에는 고성현령의 처벌을 요청하는 상소가 있었다. 전(前)고성현령 정필신(鄭弼臣)의 처벌 사유를 적시한 상소문의 내용을 보면 사헌부에서 보고한 죄목이 여러 가지였다. 정필신은 3년 동안 고성현령으로 재직하면서 성첩(城堞)을 보수한다는 구실로 고을 백성들의 역가(役價)를 횡령하여 사익을 채우고, 공해(公廩)를 수리한다는 명목으로 전임 수령이 건축한 것을 모두 자기의 공적으로 돌리고 감사(監司)에게 청탁하여 포상을 요청하는 글을 올렸으며, 봉산(封山)의 금송(禁松)을 벌목하여 판재(板材)를 많이 만들어 은닉한 사실 등이었다. 이러한 불법을 많이 자행한 고성수령에 대한 사안에 대하여 영조(英祖)는 조사보고토록 하였다. 동왕 49년에는 사헌부에서 고성현령 정여익(鄭汝益)의 파직을 요청하였다. 그 사유는, 안으로 간교한 기생을 가까이 하여 정사(政事)를 해롭게 하고 밖으로는 교활한 아전들이 권세를 농락하며, 춘궁기와 같은 곡식이 귀할 때 쪽정벼로 빈민들에게 분급하였다가 실곡(實穀)으로 받아 금전을 만들어 오로지 사익을 챙기는 일에 몰두했다는 수령의 행실을 지적하였다. 이 사안은 다시 조사하여 보고토록 하였는데, 영조(英祖) 연간에 확인되는 고성수령들에 대한 처벌요청사유와 처벌된 사유 들을 종합해 보면, 비책임자·식건 부족·업무처리 미숙·관곡 유용·금송 벌목 은닉·백성 수탈·재물 횡령·부정축재 등으로 능력과 자질이 만족할 만한 수준이 되지 못하였으므로 야기된 결과였다. 동시에 당시 이러한 상황에서 고성지역의 백성들이 받는 고통은 가중되었을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정조(正祖) 14년에는 금전적인 문제를 야기한 고성의 수령을 지낸 홍문관 수찬(修撰) 민창혁(閔昌赫)의 파직을 요청하였으나 그의 종형제인 전라도 관찰사 민태혁(閔台赫)을 파직시키는 정조(正祖)의 판단과 결정이 있었다. 동왕 15년에는 새로 임명된 고성현령 임무원(林懋遠)을 재심사토록 하였다. 부적격자로 사간원의 지적을 받았기 때문이다. 동왕 19년에는 영남지역 암행어사인 유경(柳暉)이 고성현령 정택창(鄭宅昌)의 죄상을 보고하였는데, 고을을 잘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동왕 24년에는 고성수령 사건이 있었음을 언급하면서 국법을 엄중히 적용토록 지시하였는데, 지방관들의 자질부족과 기강해이 등이 그 원인으로 짐작된다. 이러한 유사한 사례들은 순조·헌종·철종연간에서도 계속 나타난다.

순조 2년에는 경상우도 암행어사인 정만석(鄭晩錫)이 고성현령 민종혁(閔宗赫)이 고을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실상을 보고하였다. 헌종 8년에는 경상우도 암행어사인 김기찬(金基

續)의 조사보고에 토대하여 전(前) 고성현령 이희정(李熙廷)을 처벌하였다. 철종 5년에는 경상우도 암행어사인 이종순(李種淳)이 고성현령인 박광진(朴光鎭)을 처벌할 것을 문서로 써 보고하였다.

한편 고성지역 토착세력들의 상황을 보여주는 사례가 있다. 인조 12년에 고성현령인 김후기(金后夔)가 농사풍흉을 재심하는 사안으로 토호들과 불화가 생겼는데 토호 3~4명이 가동(家僮)들을 다수 거느리고 죄수들을 마음대로 석방하고 활과 화살을 지니고 연일 관아를 포위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은 수령과 지역 토착세력들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측면이 있는데, 토지측량인 양전(量田)의 과정에서 수령들이 실제대로 정확하게 측량하다가 토호들의 분노를 촉발하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현상을 예방한다는 의미에서 당시 토착세력들인 토호(土豪)들을 엄격하게 조사하여 처벌토록 하였다.

고성지역의 수령과 수령을 보좌하는 향리층 및 백성들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사례로는 고종 6년 8월의 기사가 주목된다. 고성지역의 호적(戶籍)을 작성할 때 농간을 부린 감색(監色) 즉 감관(監官)과 색리(色吏)를 체포하여 사실을 조사할 때 백성들이 분노하여 주먹으로 타살한 감색구타살해사건이 발생하였다. 지역 백성들의 분노가 감색을 구타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이다. 이 사건의 주동자 3명은 통영(統營)에서 효수(梟首)되었고, 나머지 11명은 차등있게 처벌되었다. 고성현령 심의직(沈宜稷)은 파직하고 체포하여 조사토록 하였다. 호적에 관한 법은 국가적으로 엄중한 일인데 향리들과 향청(鄉廳)의 좌수(座首)와 별감(別監) 등 향임(鄉任)이 조종하고 이들에게 맡겨 혼란스럽게 했다는 이유와, 수령으로서 태만하여 제대로 살피지 못하여 이러한 변고를 초래한 책임을 물어 처벌한 것이다.

19세기는 중앙정치의 파행과 더불어 전국적인 농민항쟁이 빈발한 시기였다. 1811년 평안도 지역의 홍경래가 주도한 항쟁을 비롯하여 1862년의 진주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된 3남 지방의 농민항쟁인 임술봉기 및 1894년의 동학농민항쟁 등이 연속적으로 발생하여 전국을 소란케 한 시기이다. 고종 6년이면 임술농민봉기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비교적 오래되지 않는 시기이다. 감색들이 구타살해되고 있었던 배경에는 부정과 비리에 대한 고성지역 백성들의 분노의 정도가 높았으며 변화에 대한 열의가 고조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시대적 현상이 반영되고 있다고 짐작된다.

고종 11년에는 암행어사의 보고에 근거하여 전(前) 고성 군수(郡守) 이국녕(李國寧)을 파직하고 의금부에서 체포하여 다시 처벌토록 하였다. 부정축재의 탐오행위 때문이었다. 동왕 19년에는 전(前) 고성 부사(府使) 이병익(李秉翼)을 압송하여 구속토록 하였는데, 역시 부정축재인 탐오행위 때문이었다.

고종 21년에는 고성에서 국가에 납입하는 세곡(稅穀)을 팔아 사적으로 유용한선주(船主)

를 효수(梟首)하였다. 세곡방매(放賣)선주 처벌사건인데, 세곡의 운반선에 규정상 동승해야 할 감색(監色)이 동행하지 않은 것은 그들 간에 어떤 협잡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어 감색들에 대한 처벌을 전제로 조사가 진행되었다. 동년 9월 전라도 감사(監司) 김성근(金聲根)의 보고를 보면 세곡방매사건의 전말이 확인된다. 당시 국가에 납부하는 고성부(固城府)의 1882년 토지세인 전세(田稅)로 쌀 6백9십7석(石), 콩인 태(太) 1백8십8석을 실은 선박 1척이 작년 10월 고군산(古群山) 앞 바다에 당도했는데 풍량이 높아 출발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얼음이 풀리기를 기다려 운송토록 지시했는데, 그 기간에 선주인 김영주(金永柱)가 세곡들을 몰래 실어다가 통영(統營)과 동래(東萊)·한산(韓山)·원산(元山) 등지에 방매하고 돈을 사적으로 유용해 버린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하여 선주와 감색들을 수색하여 체포하고, 곡물을 주관하는 고성부사(固城府使)인 정해식(鄭海植)은 파출(罷黜)토록 요청하였다. 그로부터 3개월 뒤 선주(船主)는 효수(梟首)되었다.

조선왕조 후기에 고성지역 관리이거나 지역민으로 처벌을 받는 경우의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지역관리들의 처벌의 사유들은 사익추구 급급·불량한 행실·자질부족·능력부족·업무처리 미숙·기강 해이·부정축재·탐오·관곡유용 등이다. 이러한 사유들은, 비적임자·식건 부족·업무처리 미숙·관곡 유용·금송 벌목 은닉·백성 수탈·재물 횡령·부정축재 등 영조(英祖) 연간에 확인되는 이유들과 대동소이하다.

저급한 수준의 수령들이 파견될 수밖에 없었던 인사(人事)의 배경을 이해하는 하나의 사례로 숙종(肅宗) 29년 11월의 기사가 참고 된다. 당시 홍문관의 부수찬(副修撰)인 박필명(朴弼明)이 누차 국왕의 소명을 위반하여 왕인 숙종이 그의 태만을 지적하고 관료들의 기강해이를 질책하면서 발언한 내용을 보면, 고성지역이 습기가 많고 기후에 따른 풍토병이 있는 지역이어서 수령으로 임명받아 부임하는 것을 사람들이 모두 싫어하여 기피하고 있었으며, 매번 문신(文臣)으로서 피잔(疲殘)한 자를 차출하여 파견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런 실태는 제도를 운영하는 바른 취지가 아니니 박필명을 고령수령으로 임명토록 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런데 자못 흥미로운 약 세가지 사실은, 고성지역에 대한 국왕과 중앙관료들의 인식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박필명을 고성수령으로 제수(除授)하라는 국왕의 지시가 있었을 때 대신(大臣)들이 ‘책벌(責罰)’이 너무 지나치니 다시 참작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마지막은, 사실상 철회요청인 신하들의 재고요청이 있었을 때 숙종이 한동안 말없이 있다가 인사지시를 철회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주목되는 점이다.

숙종 29년이면 봉단간의 대결구도는 이미 9년 전인 숙종 20년의 갑술환국을 결정적인 전환점으로 남인들이 도태되고 서인들이 일당지배체제를 확립해 오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런 정국상황을 고려하면 이 사례는 국왕의 고유한 인사권에 간여하여 그들의 의사를 관철하고

있었던 집권 서인정치세력들의 현실 정치에 있어서 영향력을 잘 보여준다. 동시에 숙종 스스로가 인식하고 있었던 고성수령들의 취약한 자질문제를 시정코자 하는 의지가 처벌적 성격이 동반되는 형식으로 표출되는 과정에서 오히려 집권관료들 다수의 집단적인 반발이라는 역효과를 가져오고, 수령의 자질이 있는 책임자를 임명코자 하는 초기의 개선의지가 퇴색해 버리고 기존의 비적절한 인식과 관행이 별다른 개선없이 지속된다는 점이다.

숙종 30년에도 사간원의 정언(正言) 김만근(金萬謹)의 상소문이 문제가 되어 그를 고성현령으로 발령을 내리도록 지시하여 떠나게 했다. 그런데 신하들이 이 인사지시의 환수(還收)를 요청하였고, 숙종은 자신의 지시를 수정하여 그를 고성에서 용궁(龍宮)으로 이배(移拜)토록 하였다. 현직관료인 경우 고성지역으로의 인사발령은 책벌적 성격이 내재하고 있었던 사례이며, 국왕과 관료들의 고성(固城)에 대한 인식, 국왕과 관료들과의 관계 등 전년도와 사례와 거의 유사한 맥락을 지닌다. 이러한 조선후기의 정국의 구도와 국왕과 관료들의 인식을 감안하면 대체로 고성수령들의 자질이 부족하고 책임자가 아니었을 것은 명약 관화해 진다고 할 수 있다.

후기로 올수록, 주로 사헌부의 6품 감찰직으로 특별히 임명되어 국왕의 밀지를 받고 잠행하는 암행어사의 파견사례가 빈번히 눈에 띄는 것은 지방관들의 불법과 비리가 많았고 동시에 지역민들의 생활상의 어려움이 점증하고 있었음을 역설적으로 웅변한다.

고성지역민들의 모습에서는 토착세력들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사례들과 고성지역민들이 분노하여 주먹으로 감색을 살해한 감색구타살해사건을 통하여 민중항쟁이 폭발적으로 발생하는 19세기 후반기로 올수록 모든 국가적 의무를 이행해야 했던 일반 민들의 신분적·경제적 부분에서 더욱 부담이 가중되는 그들의 실상과 처지를 짐작할 수 있으며, 물리적인 항쟁으로 그들의 의사를 표출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 (2) 고성백성들의 처지와 구휼 및 창고 관련

조선시대 백성들은 국가로부터 부여된 각종 의무를 이행해야 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전세(田稅)와 공납(貢納)을 바쳐야 했고, 또한 요역(徭役)과 군역(軍役)의 신역(身役)을 수행했다. 임진왜란 이후 국가의 조세체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전세인 전분6등과 연분9등법이 폐지되고 영정법(永定法)이 시행되었으며, 공납제는 방납(防納)의 폐단을 시정코자 대동법(大同法)이 등장하였다. 그리고 음성적이고 변칙적인 대립제(代立制)와 방군수포제(放軍收布制)의 문제들을 바로잡고 동시에 과중한 백성들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하여 균역법(均役法)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수취체제의 정비에도 불구하고 봉당간 투쟁의 격화와 중앙정치의 권력 집약화 현상에 따른 사회적 폐단들은 해소되지 않았다. 능력과 자질이

부족한 지방관들에 의해 자행된 비리와 불법, 수취체제의 문란과 수탈 등에 따른 일반 백성들의 생활상의 불안정은 고조되었다. 농민항쟁의 주된 요인의 하나가 이들에 부과된 각종 과중한 부담이었다. 불법적인 수탈에 저항하고 있는 항조(抗租)적 성격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이 시기 잡세(雜稅)와 더불어 전정(田政)·군정(軍政)·환곡(還穀)인 3정(政)의 문란은 농민들의 일상적인 삶의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정조(正祖) 즉위년 8월에 궁방(宮房) 관리인 도장(導掌)의 폐단을 엄하게 처벌토록 하였다. 그 배경은 고성지역 백성의 민원으로 인하여 조사가 진행되었는데 토지세를 징수하는 도장(導掌)들의 부당한 남징(濫徵)과 경작지가 아닌 백지(白地)에서도 조세를 부과하여 횡령하는 정황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영조(英祖) 30년 1월에는 영남이정사(嶺南釐正使) 민백상(閔百祥)이 도내의 실상을 조사하여 국왕에게 보고하는 자리에서 문답이 있었다. 당시 고성지역에 대한 실상이 언급된다. 고성지역의 균역청에 납부하는 세는 9십냥(兩)인데 수령이 미역을 사서 생기는 차익이 2백냥이나 된다고 하였다. 국왕은 미역에도 세금이 있느냐고 놀라워 하지만, 광전세(藿田稅)라고 하여 균역청에 납부하는 세금이 있었는데 고을 수령이 미리 납부하고 백성들을 시켜 미역을 채취하게 하여 2배 이상의 이익을 남기면서 백성들이 그 폐해를 감내하고 있었다. 동왕 동년 4월 호남이정사(湖南釐正使) 이성중(李成中)의 보고에서도 남도지역과 해안지역의 백성들의 실상이 나타난다. 환곡(還穀)의 폐단에 관한 것이다. 환곡은 춘대추납(春貸秋納)의 방식으로 어려운 백성들을 구제한다는 위민(爲民)시책인데, 반강제적으로 할당되어 한 집의 환곡이 수십 석(石)에 이르므로 백성들이 원망하고 도망가는 요인이 되고 있었다. 당시 이성중의 보고에 의하면, 가장 백성들이 원망하는 것은 통제사(統制使)가 있는 통영(統營)에 납부하는 곡식이었다고 한다. 따라서 고성에 많이 보관하고 있는 통영의 곡식을 다른 고을로 옮기지 말고 통영에서 사용하는 곡식은 고성 등 가까운 고을들에서 납부토록 함으로써 영호남의 통영납부곡식 방법을 개선하여 민폐를 줄이자는 건의였다. 동왕 50년 고성의 유생(儒生) 이봉징(李鳳徵)이 시폐(時弊)와 백성들의 고통을 기술한 상소문을 올린 저간의 사정은 고성지역 백성들의 어려움이 제도적으로나 가시적으로 그다지 개선되거나 변화되고 있지 못했던 실정을 짐작하게 한다.

정조 11년 5월 경상우도(慶尙右道) 암행어사 이서구(李書九)의 보고를 보면, 비록 다수의 차이는 있으나 군정(軍丁)이 노약자들이고, 한 명이 여러 가지 역(役)을 짊어지고 있는 실상이 나타난다. 균역의 의무를 담당하는 건설한 양정(良丁)은 그 수효가 계속 감소하고 있었다. 지역 백성들 가운데 부유하고 처세에 능한 자들은 관속(官屬)들과 결탁하여 각종 의무에서 제외되거나 면제되면서 각양각색의 폐해들이 ‘잔민(殘民)’ 즉 쇠잔한 백성들에

게만 편중되어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백성들도 이러한 환경이 일상적인 습관이 되어 당연시하는 풍토가 되고 있었다. 이러한 폐해는 통제영이 있는 고성지역 영하(營下)의 작은 고을들이 더욱 심한 실정이었다.

정조 14년 8월 사간원에서 올린 상소문의 내용은 고성백성들의 열악한 사정을 잘 보여준다. 고성 등 연변 11개 고을들은 주된 생업이 어업(漁業)인데 균역청이 설치된 이후 어장(漁場)의 좋고 나쁨을 따지지 않고 숫자만으로 백성들에게 나눠주어 세를 받아 상납하고 있었다. 그리고 병신년(丙申年)인 1776년부터는 통영(統營)에서 관청비용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11개 고을들의 어장세(漁場稅)를 3년을 기한으로 균역청에서 빌려 사용했다. 그러나 균역청에 납부하는 것은 줄어들지 않았고, 통영에 납부하는 것은 없던 것이 새로 추가되어 더욱 혹독하게 되었다. 한 지역에서 두 곳에 세를 바치게 된 것이 이때부터 시작되었다고 하였다. 무술년(戊戌年)인 1778년에는 통영에서 인근 고을 백성들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주고 있었다. 어장 중에서 좋은 곳은 각 관청에 소속시켜 팔아 버렸고, 고기잡이 할 때 영문(營門)의 장교와 군사들이 감독을 구실로 잡다한 어세(魚稅)를 매겼는데 어선 한 척당 5냥 씩이었다. 거제(巨濟)에서는 멸치에 대한 멸어세(蔑魚稅)로 어선 한 척당 5냥 씩 징수하는 행위를 금지시켰는데 멸치를 소어(蘇魚)라고 고쳐 한 척당 7~8냥씩 징수하고 있었다. 관청에서 팔아버린 곳 외의 가치가 없는 곳은 쓸모가 없는 데도 세금을 징수할 때는 좋은 어장과 동등하게 징수하고 있었다. 이러한 과중하고 부당한 부담으로 유망(流亡)하는 백성들이 속출하고 호소할 곳도 없는 실상이었다.

개선되지 않았던 환곡의 폐단은 정조 15년에도 이어지며, 동왕 18년 12월 영남 위유사(慰諭使) 이익운(李益運)이 현지를 시찰하고 올린 보고서를 보면 고성지역 환곡의 실태가 잘 확인된다. 고성의 고성창(固城倉)은 경남도내 통영의 관할 창고 5곳 중의 하나였다. 나머지 4곳은 진해의 창포(倉浦) · 남해의 곡포(曲浦) · 밀양의 삼랑(三浪) · 하동의 목도(鶯島)였다. 고성 등 이 지역들은 백성들의 숫자는 적은데 창고의 비축 곡식은 인구대비로 볼 때 많았기 때문에 누적된 환곡의 폐단이 고질적이었다. 설상가상으로 통영창고를 별도로 신설하자 곡식의 수량이 더욱 증가하게 되었다. 이 5곳의 통영창고는 소재지 본읍에서 전혀 간섭하지 않았고 실무를 담당하는 감색(監色)과 고자(庫子)도 모두 영문(營門)에서 임명하여 그들에게 창고의 장부(帳簿)를 일임하고 있었다. 여기서 여러 가지 농간과 행패가 자행되고 있었다. 통영창고 보기를 마치 호랑이나 이리(랑:狼)를 보듯이 하여 봄에 환곡을 받으면 가을에 갚을 것을 미리 근심하고 탄식하는 실상이었다. 위유사(慰諭使) 이익운(李益運)이 현지에서 목격한 백성들의, ‘통창재피(統倉在彼) 철망미해(鐵網未解) 애아민생(哀我民生) 전안하시(奠安何時)’ 하고 탄식하는 그들의 처지를 보고하면서 개혁을 건의하고

있었다.

환곡이 본래 위민(爲民)을 위한 사회구호시책이었는데 고을 백성들을 괴롭힌 여민(厲民) 제도로 변질된 주된 요인의 하나는 환곡이 고을 관내 백성들에게 거의 강제적으로 할당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풍년이 들어 고을의 비축 수량이 증가할수록 지역 백성들은 그들이 이행해야 할 부담 때문에 오히려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다. 또한 고성 등 해안지역 백성들은 통영의 관하에 속하여 통영이 감사(監司)의 통제를 받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통영관속들의 횡포와 부당한 행위가 지역민들에게 전가되고 지속되고 있었다. 인조 13년 7월의 사례를 보면, 통영의 경우 둔전군(屯田軍)을 병자하여 고성지역에서 1백4십명을 뽑아 한 사람당 쌀 1석(石), 조(租)로 3석을 받아 내고 있었고, 그 호(戶)에서 해야 할 잡역을 다른 백성들에게 옮겨 부담시키고 있었다.

한편 정조 23년에는 고성 등지의 토산물의 진상과 관련한 폐단들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고성은 생산되는 특별한 물품이 없으므로 이전처럼 다른 지역에서 매입하여 진상토록 하였는데, 지역 백성들에게 일정한 부담이 전가되는 일이었다. 조선 전기에는 고성의 토산물로서 고성현의 남쪽 주악곶(住岳串)의 바다에 임해 있는 암산(岩山)에서 생산되는 녹반(碌礮)이 품질이 우수하다고 하였는데 이때는 이미 생산이 단절된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정부의 구휼(救恤)사례이다. 흉년이나 홍수와 기근 등 자연 재해시 고성에 행해진 구호시책이다.

우선 인조(仁祖) 13년에는 고성의 양전(量田)을 재조사 하도록 하였다. 양전은 국가의 재정과 직결되는 부분이다. 구체적인 진휼(賑恤)시행 논의는 영조(英祖) 44년 10월에 있었다. 고성과 사천 등지의 고을들에 내년을 기다려 진휼을 실시하면 백성들이 견디지 못하고 흩어질 염려가 있으므로 군수미(軍需米)를 발매하여 구호한다면 백성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입을 것이라는 건의였으나 수용되지는 않았다. 조선후기에서 진휼시책은 정조(正祖)연간에 가장 많이 시행되었다. 본격적인 진휼은 정조(正祖) 3년 5월에 확인된다. 전국적인 진휼시책이 동년 정월부터 시작하여 5월 하순에 마무리 되었다. 고성을 포함한 경상도내의 기민(饑民)의 총수는 7십4만1천5백5십8명이었고, 진곡(賑穀)은 1십3만5천8백7십석(石)이었다. 3년 뒤인 동왕 6년 6월에도 진휼을 시행하였는데 전년도 12월부터 시작하여 6월경에 마쳤다. 고성을 포함한 영남의 당시 기민(饑民)의 총수는 1백3십6만4천5백명이었고, 진곡(賑穀)은 9만4천7백3석(石)이었다. 약 5년뒤 정조 11년 5월에도 전국에서 6도(道)를 선정하여 진휼이 시행되었다. 동년 정월에 시작하여 5월 하순에 마쳤다. 고성을 포함한 영남의 당시 기민(饑民)의 총수는 1백8만8천2백8십7명이었고, 진곡(賑穀)은 8만3천5백3십1석(石)이었다. 6년 뒤인 동왕 17년 6월에도 진휼이 시행되었다. 동년 정월에 시작하여 6월초에 마쳤

다. 고성을 포함한 영남의 당시 기민(饑民)의 총수는 2백8십2만9천5백9십6명이었고, 진곡(賑穀)은 2십만5천7백5십6석(石)이었다. 정부가 주관하는 진휼정책의 시행과정에서 부유한 사람으로서 자원하여 1천석을 제공한 사람에게는 현직벼슬을 주었고, 5백석이상 제공한 관료들에게는 품계를 올려 주었으며, 1백석 이상 제공한 사람들에게는 승진시켜 임명하였다.

정조 18년 11월에는 호남지역에 이미 시행한 것과 같이 흉년으로 어려움을 겪는 고성을 포함한 영남 23개 고을에 대하여 조세를 건감(蠲減)해 주었다. 정조 19년 5월에도 진휼이 시행되었다. 동년 정월에 시작하여 5월 초에 마쳤다. 고성을 포함한 영남의 당시 기민(饑民)의 총수는 1백4십2만4천8명이었고, 진곡(賑穀)은 1십만5천4백7석(石)이었다. 3년 뒤인 정조 22년 5월에도 진휼이 시행되었다. 동년 정월에 시작하여 5월 초에 마쳤다. 공진(公賑)으로 진휼한 기민(饑民)의 수는 3십6만4백7십8명이었고, 진곡(賑穀)은 2만6천1백9십석(石)이었다. 사진(私賑)으로 진휼한 기민(饑民)의 수는 8만2천1백5십3명이었고, 진곡(賑穀)은 5천3백6십1석(石)이었다. 고성은 사진(私賑)으로 진휼한 지역이었다. 그리고 좌병영과 우병영·진(鎭)·역(驛) 등에 진휼한 기민(饑民)의 수는 1십2만2천2백2명이었고, 진곡(賑穀)은 8천7백6십석(石)이었다. 정조 23년 5월에도 진휼이 시행되었다. 동년 정월에 시작하여 5월 하순에 마쳤다. 고성을 포함한 영남의 당시 기민(饑民)의 총수는 4십6만3천9백4십8명이었고, 진곡(賑穀)은 3만4천3백4십석(石)이었다.

순조 7년 2월에는 수재로 사망한 고성현 사람 37명에게 홀전(恤典)을 시행토록 하였으며, 고종 1년 4월과 동왕 4년 11월·동왕 28년 12월에도 동일한 원인으로 사망한 고성현 사람들에게 홀전을 시행하였다. 고종 2년 9월 통제사(統制使) 이봉주(李鳳周)의 재난상황에 대한 보고를 보면 여름 장마철 태풍의 피해가 많았음을 보여준다. 7월 하순의 거센 비바람으로 고성 등 6개 고을과 군영(軍營)의 동서부에서 익사자가 87명, 무너진 민가가 3백2십8호(戶), 무너진 관청이 1백2십7칸, 파손된 전선(戰船)과 여타 선박들이 8백1십9척이었고, 부러진 소나무가 1만5백3그루였다. 이러한 재해를 당하여 통제사는 자신의 녹봉의 일부로 구급대책을 취하였고, 국왕은 구휼조치를 시행토록 하면서 통제사에게는 벼슬을 한 등급 올려 주었다.

고종 10년 9월에는 고성부(固城府)에서 재배하는 목화농사가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병조(兵曹)와 공조(工曹)에 납부하는 군포를 돈으로 대납하고, 금위영(禁衛營)과 어영청(御營廳)의 두 군영(軍營)에 납부하는 보포(保布)는 절반을, 훈련도감에 바치는 보포는 3분의 1을 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특별히 허락해 달라는 통제사의 건의가 있었다. 이러한 요청에 대하여 공조에 납부하는 군포는 돈으로 대납토록 하고, 병조와 각 영(營)에 납부하는 군포는 5분의 1을 돈으로 대납토록 하였다. 백성들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한 결정이지만 백

성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조처들이 체감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짐작된다.

고종 23년 10월에는 전년도 가을 재해로 고성에서 납부해야 할 조세의 4분의 1을 내년 가을까지 납부 연장토록 하였는데 큰 흉년과 지독한 전염병으로 백성들의 처지가 형언하기 어려울 정도로 참혹한 실정이었으므로 납부 연기기한을 계속 연기해 주도록 하자는 의정부의 건의를 수용한 것이었다. 끝으로 고종 38년 4월에는 고성 등 경상남도 3개 군(郡)의 신(新) 재결(災結) 17결에 대하여 감세해 주는 결정을 하였다.

한편 앞에서 통영관할하의 고성창에 대하여 언급하였는데, 고성지역의 창고(倉庫)로는 선창(船倉)·민고(民庫)·해창(海倉) 등이 있다. 영조 38년 2월에는 고성의 선창(船倉)을 도선(道善) 앞 바다로 이전하였다. 정조 14년 5월 경상도 관찰사 이조원(李祖源)의 보고문에 의하면, 고성의 민고(民庫)는 설치한 것이 오래되었고 당시는 폐단이 없다는 민고운영에 대한 언급이 있다. 민고는 오로지 관청의 경비지출에 대비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한 창고이다. 정조 16년 윤4월에는 고성에 별도로 해창(海倉)을 설치하였다.

한편 영조 연간에 출간된 『여지도서』에 의하면 고성의 창고(倉庫)로는 사창(司倉)·대동고(大同庫)·관청고(官廳庫)·진휼고(賑恤庫)·육군기고(陸軍器庫)·수군기고(水軍器庫)가 있었다. 수군기고는 관아의 남쪽 7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배가 머무는 곳이라고 하였다.

### (3) 고성수령 임명 및 선정 포상 관련

조선후기 고성지역의 이 유형은 고성수령의 임명기사와 수령 및 고성지역 관련자들의 포상사례 그리고 충효열(忠孝烈)과 관련된 포상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먼저 고성수령으로 선조(宣祖) 34년에 윤우(尹佑)를 고성현령으로 임명한 기사가 있다. 동왕 39년에는 최강(崔綱)을 경상수사(慶尙水使)로 임명하였다.

한편 영조 30년에는 심관(沈鑑)을 고성현령에 임명했으나 국왕을 면대할 때 심관의 노모가 69세의 나이였기 때문에 노모를 봉양토록 교체하였다. 부모가 나이가 70세 이상이면 3백리 밖에 임명하지 않는다는 법조항의 내용을 융통성 있게 적용한 것이다.

다음은 포상 관련이다. 고종 3년에 경상도 감사(監司)의 포상건의에 근거하여 고성현령인 윤석오(尹錫五)에게 벼슬을 올려 주는 가자(加資)의 포상을 하였다. 포상의 사유는 기근을 구제하는데 노력한 일이 감사(監司)에 의해 잘 평가된 것으로 보인다.

고성현령 이외로는 선조(宣祖) 38년 9월 무신(武臣)으로 가리포첨사(加里浦僉使) 최강(崔綱)을 해진(海陣)근무에서 발탁 승진 임용토록 하였다. 담당직무를 잘 처리하고 군선(軍船)을 통솔하는 주사(舟師)의 모범이 된다는 병조(兵曹)의 보고에 근거한 좌부승지(左

副承旨) 최렴(崔濂)의 건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듬해 5월 최강(崔綱)은 경상수사(慶尙水使)에 임명되었다. 그 후 최강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무곡선(貨穀船) 표류사건과 관련하여 재판을 받고 안보적 측면에서 별다른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석방되었다.

한편 정조(正祖) 16년에는 임진왜란의 전란시에 활약한 충신들에 대하여 거듭 포상을 하는 과정에서 고성(固城)을 보장(保障)한 고(故) 성주목사(星州牧使) 제말(諸沫)에게 시호(諡號)를 내리고 추증하는 등 포상을 시행하고 그의 후손들을 발탁토록 하였으며 그의 조카 제홍록(諸弘錄)에게 벼슬을 주는 등의 논공행상을 하였다. 이에 관한 후속조치들이 정조와 순조 연간에 확인된다.

다음은 지역 사람에 대한 포상의 사례들이다. 고성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한 포상 사례는 정조(正祖)와 순조(純祖) 연간에 확인된다. 먼저 정조 11년에 예조(禮曹)의 요청에 따라 고성의 한녀(韓女)에게 정려(旌閭)의 표창을 했다. 효열의 행실이 배경일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순조 12년에 고성의 고(故) 사인(士人) 백봉래(白鳳來)는 예조(禮曹)에서 전국의 충효열(忠孝烈)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선정하여 보고 할 때 고성지역의 효자로 선정되어 증직(贈職)의 포상이 건의되었다. 사인(士人)임으로 양인으로서 일반 백성은 아니고 양반층의 신분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동왕 13년에는 고성의 열녀(烈女)로, 고(故) 사인(士人) 이덕로(李德老)의 부인 박씨(朴氏)가 선정되어 정려(旌閭)의 포상을 받았다. 끝으로 동왕 16년에는 고성의 고(故) 동지(同知) 최균(崔均)과 그의 아우 고(故) 부총관(副總管) 최강(崔綱)에 대해 임진왜란 때 의병을 일으키고 갑자(甲子)년에 군공(軍功)을 평가하여 모두 증직(贈職)의 포상을 하였다. 고종(高宗) 때 이르면 최균(崔均)은 이조판서(吏曹判書)에 추증되었고 ‘의민(義敏)’의 시호가 부여되었다.

#### (4) 군사적 방어 관련

선조 31년 11월 27일자 좌의정(左議政) 이덕형(李德馨)의 보고는 임진년 일본의 침략으로부터 시작된 약 7년간의 조·일전쟁의 종결을 알리는 내용이다. 이 내용에 의하면, 11월 19일 고성과 사천·남해에 있던 왜선(倭船) 3백여 척이 합세하여 노량도(露梁島)에 도착하자 통제사(統制使) 이순신(李舜臣)이 전선(戰船)을 거느리고 곧바로 진격하여 싸우고, 명나라 군사도 연합하여 싸웠다. 이 전투에서 왜선 2백여 척이 격침되고 사상자가 수천여 명이었으며 왜적이 대패하였다. 이 노량해전에서 통제사 이순신과 가리포첨사(加里浦僉使) 이영남(李英南)·낙안군수(樂安郡守) 방덕룡(方德龍)·홍양현감(興陽縣監) 고득장(高得蔣) 등 10여명이 탄환을 맞고 전사하였다. 일본의 남은 적선(賊船) 1백여 척과 왜적들은 달아나거나 모두 먼 바다로 도망치면서 전쟁이 종결되는 것이다.

조선왕조 전기에서 ‘왜구 관련 및 군사적 방어대책’의 유형이 최다 건수를 보여주고 있듯이 고성은 바다를 접해 있는 지리적 특성으로 해상을 통한 왜구들의 노략질이 많았었다. 종전(終戰) 이후 왜구들에 의해 자행되는 약탈과 살인·방화 등의 사례들은 거의 사라지고 주로 전후(戰後) 보완 시책들과 군사적인 방어대책들이 취해지고 있었다.

종전된 그해 12월에 정기룡(鄭起龍)을 경상우도방어사(慶尙右道防禦使)로 임명하여 고성과 진주 사이에 주둔하면서 둔전(屯田)을 경작하고 군사훈련을 하도록 조치하였다. 선조 33년 7월에는 경상수사(慶尙水使) 본영(本營)에 정박 중이었던 전선(戰船)과 명나라 전선(戰船)들이 태풍으로 파선되고 군기(軍器)와 화약(火藥)들이 유실되는 등의 큰 피해를 당했는데 파손된 배들을 수리하는 동안 고성과 창원에 정박해둔 전선들을 본영으로 이동시켜 불의의 사변에 대처토록 하였다.

선조 34년 1월에는 겸4도도체찰사(兼四道都體察使) 이덕형(李德馨)이 공식적인 업무로 경상도로 내려가기 전 국왕을 알현하고 국방문제와 여타의 전반적인 상황들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고성과 사천·곤양·순천 등지는 민가가 거의 비었고, 앞쪽의 당포(唐浦)와 사량(蛇梁) 사이는 형편없이 허술하여 염려된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었다. 그는 당시 전국 4개 도(道)에 관한 일체의 처결권을 위임받고 파견되었다. 선조(宣祖)의 지대한 신임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인식한 문제점들은 현지를 실제 순력하면서 어느정도 실효성 있게 현지상황에 적합하게 보완되면서 추진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인조 16년 1월 15일자의 기록은 이런 점을 확인시켜 준다.

선조 36년 3월에는 전의감(典醫監)의 생도(生徒)였던 한찬(韓攢)이 임진왜란 초기에 왜군의 포로가 되어 일본에 갔다가 일본군과 함께 다시 조선으로 들어와 국내 주둔하는 왜군들의 동향을 수집하는 등의 일을 하던 중 고성의 왜군 주둔지에 잠입하였다가 체포되어 다시 일본으로 보내졌다가 대마도로 탈출하였던 그간의 상황들을 진술하였다. 전쟁이라는 특별한 기간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한 인물의 행적이라고 할 수 있다. 선조 37년 7월에는 거제의 구영(舊營)을 수호하는 것이 합당한지, 구영과 고성(固城)을 버리고 새로 적합한 장소를 물색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군영(軍營)과 관련한 의견이 있었다. 또한 대마도의 왜선들 동태를 예의주시하며 불의의 사태에 대비하면서 한편으로는 일정 정도 공식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정황들은 선조 39년 6월·7월·11월에 확인된다.

한편 효과적인 전투선을 건조하자는 창의적인 의견을 제시한 사례가 있다. 선조 39년 12월 고성현령을 지낸 나대용(羅大用)은 임진왜란 때 이순신의 막하에서 전공(戰功)을 세운 사람이었다. 그는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수군의 전함들인 판옥선(板屋船)과 거북선(龜船)의 약점들을 보완하여 ‘창선(金倉船)’을 건조하여 배치하자는 상소를 올렸다. 그의 상소

문을 보면, 거북선은 전쟁에서 이점이 있으나 사수(射手)와 격군(格軍)의 필요 인원이 판옥선의 1백2십5명 이상이고, 활을 쏘기에도 불편하기 때문에 각 영(營)에 한 척씩만 배치 하면서 더 이상 만들지 않고 있었다. 그는 1599년 기해(己亥)연간에 판옥선도 아니고 거북선도 아닌 다른 모양의 배를 만들어 칼과 창을 뽀뽀하게 꽂아 ‘창선’ 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격군 42명을 나누어 태우고 바다에 나아가 시험을 해보니 속도가 대단히 빠르고 활쏘기도 판옥선 보다 더 편리하였다. 그 뒤 나라가 평화로워지자 한 차례도 사용해 보지 못하고 방치되어 버렸다. 그래서 그는 다시 창선을 만들어 여러 장수들에게 한 척씩 맡긴다면 해안방어에 효과적일 것이라는 제안이었다. 그의 건의는 수용되어 그에게 감독을 맡겨 창선을 건조하여 효율성 여부를 시험해 보게 하였는데 독창적인 제안이었다.

한편 정조 22년 1월에는 전선(戰船)과 병선(兵船)을 세곡을 운송하는 조선(漕船)으로 겸용(兼用)할 계획으로 각 1척씩이었던 고성(高城)의 전선과 병선을 우조창(右漕倉)에 소속시키는 안을 만들기도 했는데 시행은 하지 않았다.

다음은 진(鎭)에 대한 것이다. 인조 16년 1월에는 진(鎭)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통제사 신경인(申景禔)의 보고를 보면 본영(本營)의 변천을 알 수 있다. 경상 우수영(右水營)의 본영은 웅천(熊川) 제포(齊浦)에 처음 창설되었다. 그 후 창원(昌原) 합포(蛤浦)로 이전하였고, 다시 오아포(烏兒浦)로 이전했다. 만력(萬曆) 임인(壬寅)년인 1602년에는 고성으로 이전하였다. 당시 고성을 본영으로 하고 거제를 행영(行營)으로 삼아, 봄에는 들어가 방어하고 가을에는 철수하였다. 3~4년 이렇게 시행하다가 갑진(甲辰)년인 1604년에 고(故) 재상 이덕형(李德馨)이 체찰사(體察使)로 해안방어 형세를 다니면서 점검하다가 근무 방식을 개편했다. 주장(主將)이 봄과 가을로 번갈아 이동하며 방어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본영에 소속된 사졸(士卒)들이 이동에 따라 안정되지 못하고, 지휘관이 외롭고 위태로운 곳에서 관장하므로 인근의 섬에 머물며 고기잡이 하는 왜인들에 의한 불의의 변란이 염려되어 본영을 두룡포(頭龍浦)로 이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영조 27년 1월에도 진(鎭)의 치폐(置廢)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고성의 사랑포(蛇梁浦) · 구소비(舊所非) · 남촌포(南村浦)의 진(鎭)은 존치하자는 경상 감사(監司) 민백상(閔百祥)의 상소문을 통한 건의가 있었는데, 영조는 비변사에서 논의하여 보고토록 하였다. 이후 고종 36년 1월에는 군대의 편제를 개정하는 안건을 반포하였다. 이 시기는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승리하여 갑오개혁을 주도하였고, 명성황후를 시해하고 을미개혁을 추진하였다. 곧 이어 아관파천이 있었으며 대한제국이 선포되어 광무개혁이 진행되는 시점이다. 칙령(勅令) 제2호로 반포된 내용은 고성에 지방대대(地方大隊)를 설치한다는 내용이다. 고종 37년 8월에는 각 도(道)의 관찰사(觀察使)들을 소집하여 국정에 관한 논의를 하였다. 이 자리에

서 해안지역의 방비는 늦출 수 없는 일이라는 의견에 고성 등은 요해처(要害處)라는 고종의 언급이 있었다. 그러나 일체가 사실상 용의주도하게 국정의 중요한 분야들을 중심으로 관여하면서 치밀하고도 지속적으로 조선의 식민지화를 가속화 하고 있었던 당시의 정세를 고려한다면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실천되기는 어려운 일이었다.

다음은 군사적인 방어책과 결부된 말(馬)과 둔전(屯田)·소나무·군수(軍需)에 대한 사례들이다.

인조 8년 2월의 사복시(司僕寺) 건의는 임진왜란 후 각 지역 목마장의 관리 실태를 보여준다. 목마장은 군사상의 목적으로 운영되었으나 전란을 겪은 이후 말(馬)들이 없는 목마장들도 많았다. 말(馬)이 없는데 목마장으로서의 용도를 대체하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 고성의 해평장(海平場)도 백성들이 들어와 토지를 점유하고 살고 있었는데, 토지를 사복시에 환속(還屬)시킬 것을 건의한 것이다. 이러한 요청에 대하여 숨기고 속인 것이 많은 자는 처벌토록 하는 지시를 하였는데, 국가적인 관리가 부실하므로 이런 곳은 유민(流民)들이 들어와 경작하고 생활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순조 2년 9월에는 고성의 둔토(屯土)를 광주(廣州)에 소속시키자는 건의가 있었으며, 고종 5년에는 고성과 거제 등지의 소나무 산이 민동산이 되어 전선(戰船)과 조선(漕船)을 건조하는 재목(材木)을 조달 할 수 없으니 소나무 벌목을 금하고, 10그루 이상 벌목한 경우 처벌토록 하였다. 고종 36년에는 전국 각 부대들에서 군수(軍需)를 유용한 자들을 조사하여 보충하도록 하였는데, 고성의 대대(大隊)에도 파견되어 실태를 조사하여 시정토록 하였다.

말(馬)과 둔전(屯田) 그리고 소나무와 군수(軍需)분야 등은 조선시대 국가의 군사적 측면에서 병사들의 사기를 높이고 무기의 수준을 제고시키는 전략적 보완수단들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고성지역에서 확인되는 이 분야의 사례들은 임진왜란 이전과는 다른 모습들을 보여준다.

### (5) 지방 행정제도와 행정구역 개편 관련

조선후기 고성의 행정제도와 행정구역의 개편은 고종(高宗) 연간에 진행되고 있었다. 고종 7년 5월에 고성현령을 개칭하여 판관겸종사관(判官兼從事官)으로 개정하지는 통제사 정규응(鄭圭應)의 건의가 있었다. 이 건의는 동년 6월에 관료들과의 논의를 거쳐 수용하는 방향으로 결정토록 하였다. 통제사 군영(軍營)의 관할하에 있는 고성의 수령직제가 개칭되면 통제사의 지휘권이 보다 강화된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직제개정 건과 함께 건의한 고을을 옮기는 이읍(移邑) 문제도 긍정적인 방향에서 논의토록 하였다.

고종 7년 8월 25일자 영의정 김병학(金炳學)의 보고를 보면, 정식으로 고성현령을 판관(判官)으로 개칭하였다. 동시에 통제사의 본영인 통영(統營)의 격과 위상에 걸맞게 ‘현(縣)’을 ‘부(府)’로 승격하였으며, ‘판관’은 ‘부사(府使)’로 역시 등급을 높이면서 종사관(從事官)을 겸임토록 하였다. 그리고 통영이 고성의 본관(本官)이 되어 고성부(固城府)안의 모든 사무는 모두 통영의 관리를 받도록 하였다. 고성의 고을의 행정적 위상이 승격되면서, 통영의 직속 관할하에 편입되는 것이다. 고성의 위상승격과 통영과의 관계는 확정되어 동년 윤 10월의 기록을 보면, 3정(政) 등 고성의 모든 업무는 통영에서 처리 결정하였다.

고종 7년 12월 3일자 기록은, 동년 5월에 공식적인 건의가 제기되고 논의를 거쳐 8월 하순에 사실상 확정된 ‘통영관할하의 고성부’라는 변화된 행정제도와 행정구역의 구체적인 후속조치들이 진행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통제사 정규응(鄭圭應)의 보고문에 근거하여 의정부(議政府)에서 고종(高宗)에게 보고한 내용에 잘 확인된다. 이 보고문에 따르면, 고성부(固城府)는 본영(本營)의 성내(城內)로 이설(移設)하였다. 객사(客舍)는 중복이 되니 건립하지 않았고, 고성현이었을 때인 구읍(舊邑)의 전패(殿牌)는 임시로 봉안하거나 아니면 땅에 묻는 일은 지시를 받아 시행하겠다는 의견이었다, 이외, 구읍의 향교문묘는 내년 봄을 기다려 길일을 택하여 이진(移建)한다는 내용, 소속관리들의 인사평가 부분, 3정(政)운영 부분, 육군의 군기(軍器)의 관리 부분, 대동미(大同米)의 수납 부분, 비축곡식의 관리 부분, 사창(社倉)곡식의 분급 부분, 유배죄수 관리 부분 및 살인사건의 2심까지는 본영에서 주관 직접 판결하고, 각종 보고문과 공식문서들은 모두 본영에서 접수하고 발송한다는 의견 등에 대하여 제시한 의견대로 시행토록 하였다. 이후 고성부의 육군군기(軍器)는 본영(本營)에 전속(專屬)시켰다.

한편 고성부를 통제영의 성(城)안으로 옮긴 후 고성의 옛 중심지인 구읍(舊邑)은 수령의 치소(治所)는 없었으나 마을과 시장(市場)은 모두 남아 있었고, 누각과 성첩(城堞)도 헐리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런 상태로 방치해 두는 것을 개선하기 위하여 또 구읍은 군사상 요충지이므로 특별히 ‘수방장(守防將)’ 직을 설치하여 책임자를 임명하여 방어하고 포수(砲手) 40명을 선정하여 매월 윤번으로 수직(守直)을 서게 하였다.

고성부를 이설하는 과정에서 공적이 있는 부사(府使) 유기동(柳箕東) 및 감독인(監董人)들에게는 포상을 하였다. 그리고 1만냥을 기부하여 역사(役事)를 도운 유학(幼學) 최규진(崔奎鎭)에게는 벼슬을 주어 임용하였다.

고성이 고려와 조선 양 왕조에서 ‘현(縣)’으로 존속하다가 19세기 고종 7년 5월 공식적인 이설(移設)건의가 제기되면서 동년 8월 하순에 사실상 ‘부(府)’로 승격 확정되어 ‘통

영소속하의 고성부'가 되었다. 고성의 치소(治所)는 통영의 성안으로 이설되었다. 이설에 따른 토목공사를 비롯한 행정적·군사적 제반 사항들이 재편되었다. 그런데 사실상 확정된 고종 7년 8월 하순으로부터 3년 7개월이 경과된 고종 11년 4월 5일에 '환읍(還邑)'의 안건이 공식적으로 제기되고 있었다. 본영과 읍(邑) 사이의 업무 처리에 있어서 장애가 많고 아전과 백성들이 모두 불편하다는 점과 구읍은 해로의 요충지이므로 방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이러한 환읍의 시행여부는 그해 6월 내부적으로 오는 가을에 환읍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7월에는 고성으로 이읍(移邑)했을 때의 조치들을 검토하였고, 8월과 9월에는 복설(復設)에 따른 소요비용들에 대한 대책이 논의되어 시행되었다. 고성의 읍치(邑治)가 통영으로 이설되는 기간은 고종 7년 하반기가 되고, 대략 4년만에 치소가 고성으로 환읍되어 복설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갑오동학농민항쟁이 발생한 이듬해인 고종 32년 5월 26일에는 지방제도의 개정이 있었다. 칙령(勅令) 제98호로 반포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국을 23부(府)의 행정구역으로 나누면서 종래의 행정구역인 부목군현(府牧郡縣)의 명칭과 관직명들은 모두 폐지하였다. 그리고 읍(邑)의 명칭은 군(郡)으로 하며, 관직은 군수(郡守)로 하였다. 고성군은 23부에서 진주부(晉州府)에 소속되었다. 다음해인 고종 33년 양력 6월 8일에는 통영을 고성으로 개정하는 안건이 확정되어 반포되었다. 을미개혁 후 공식적인 일자표기는 양력으로 개정하였다. 양력 6월 8일자로 통영에서 고성으로 환읍된 지 약 22년만에 통영이 고성에 합속된 것이다.

고종 33년 7월에는 전국의 우편사무와 통신을 담당하는 전보사(電報司) 관제(官制)를 반포하였다. 각 지역을 1등사(等司)와 2등사(等司)로 분류하여 업무를 맡았는데, 고성은 2등사에 소속되었다.

고종 37년 5월 16일에는 칙령 제19호로 경상남도 고성군 구역 내에 있는 이전 통제영 구역을 진남군(鎭南郡)으로 설치하는 안건을 결정하여 반포하였다. 이 안건이 반포되면서 고성군에 합속된 통영이 채 4년이 안되어 행정구역상으로 분리되어 진남군이 되었다.

고려 성종조에 도(道)제도가 처음 등장한 이후 5도양계 체계의 군현제도가 마련되는 과정에서 그리고 조선왕조의 건국이후 임내(任內) 지역이 점차 소멸되면서 면리제(面里制)가 등장하는 15세기 태종조를 중심으로 8도체계하에 전국적인 군현제도의 정비와 개편의 과정에서 행정제도와 행정구역의 치분속(置分屬)과 통폐합(統廢合)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시기적으로 문호개방 이후에도 지방행정제도의 개폐(改廢)와 이속(移屬)이 적지않게 진행되고 있었는데, 고성군의 경우도 이러한 흐름선상에 있음을 알 수 있다.

### (6) 자연현상과 재해 관련

자연 재해로는 여름철 광풍과 폭우로 인한 사례가 선조 33년 7월과 동왕 34년 6월 그리고 광해군 1년 8월에 확인된다. 장마철의 폭우와 광풍, 여름과 가을철의 태풍은 해마다 반복되는 자연현상이기 때문에 기록에 확인되지 않는 그로 인한 피해는 경중의 차이는 있을 지라도 반복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영조 9년 8월에는 도내에 오랜 가뭄이 들고 고성에는 충재(蟲災)로 곡식이 손상되었다.

고성지역에 우박이 내린 기록으로는 인조 7년 윤4월과 숙종 6년 3월에 확인된다. 지진으로는 집이 흔들리는 정도의 지진이 현종 8년 4월에 발생했다. 실록의 이 기록은 현종실록과 현종개수실록에 모두 기록되어 표의 분류상 구분하였으나 동일한 일자의 기록이다. 천동의 기록으로는 영조 7년 11월에 나타난다.

### (7) 기이(奇異) 관련

조선후기 고성지역에서 실록에 확인되는 특이한 사례 5건은 인조 때가 4건이고 숙종 때가 1건이다. 인조 3년 2월에는 민가(民家)의 암탉이 수탉으로 변했다는 기록이 있고, 동왕 동월에 수송아지의 발굽이 성장하면서 말발굽으로 변했다는 기록이 있다. 인조 14년 1월에는 고성현의 크고 작은 돌 20여 개가 저절로 자리를 옮겼다고 했으며, 인조 24년 5월에는 백성 박망남(朴望南)의 처가 세쌍둥이 여아를 출산한 일을 감사(監司)가 보고했는데 국왕이 쌀과 고기를 넉넉히 주라고 지시하였다. 끝으로 숙종 9년 4월에는 닭이 병아리를 낳았는데 머리 하나, 눈 하나, 네 개의 날개, 네 개의 다리가 있었다고 한다.

### (8) 기타

기타의 사례는 8건이다. 선조 33년 6월에 명나라 군사들을 조력하는 일 때문에 파종시기를 놓쳐 농사작황이 좋지 않았던 사실과, 인조 22년 7월 각화도(覺華島) 앞 바다에서 한인(漢人)에게 포로가 되어 중국에 갔다가 의주(義州)로 탈출한 고성군인(固城軍人) 박계룡(朴戒龍)을 고향 고성으로 돌아가도록 조치한 일이다. 그리고 고성 법천사(法泉寺)의 승(僧)이 법천사에 덕흥대원군(德興大院君)의 화상(畫像)이 보존되어 있다고 하므로 현지에서 확인하고, 한양으로 이송하여 조사한 결과 진본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우선 예조(禮曹)에 보관하여 다시 논의토록 하였다. 영조 5년 3월과 동왕 8년 5월에 나타난다. 덕흥대원군은 선조(宣祖)의 부친이다. 고성 법천사와 어떤 인연으로, 위조본으로 추정되지만 초상화가 봉안되었던 것 같다. 덕흥대원군의 본부인 자녀는 아니지만 고성출신 현감과 결혼한 딸이 확인되는데, 그런 연유가 아닌가 한다.

영조 38년 5월에는 고성과 진주의 곡식을 허락 없이 방출하여 기민(飢民)을 구제한 영남 어사(嶺南御史) 김종정(金種正)을 일단 파직하였다가 곧 재임용하였던 사례, 정조 9년 3월에는 고성과 곤양 사이에 정미년(丁未年)에 수재(水災)가 있을 것이라는 등의 참언(讖言)을 유포한 문광겸(文光謙)·양형(梁衡) 등을 체포하여 조사한 사건, 정조 11년 6월에는 진해현감(鎭海縣監) 민수익(閔修益)이 고성의 겸임으로 통제사를 만나러 온 내용이 나타난다.

끝으로 고종 8년 3월 고성 충렬사(忠烈祠) 등 전국적으로 47개의 서원(書院)을 남기고 나머지 서원들은 모두 훼철(毀撤)토록 하였다. 서원은 조선후기 지방유교 교육을 담당한 대표적인 사학(私學)이었으나 붕당의 기간 중앙정치와 연계되고, 지방민들에게 여러 가지 폐단을 유발하는 등 지방유생들의 근거지로서 역기능적인 측면들이 많았기 때문에 대원군이 집권하는 고종연간에 흥선대원군의 주도하에 대대적인 혁파가 있었다. 47곳의 서원만 존치시키고 나머지 모든 전국의 서원들을 철폐하였는데 현재의 행정구역으로 경상남도는 함양의 남계서원(藍溪書院)·진주의 창렬사(彰烈祠)·고성의 충렬사(忠烈祠)·거창의 포충사(褒忠祠)는 훼철에서 제외되어 존치되었다.

지금까지 조선시대 고성지역의 역사적 상황들을 실록의 기록들을 중심으로 자세하게 살펴 보았다. 조선왕조 건국 이후 고성지역에서도 시간의 흐름과 더불어 다양한 현상들이 펼쳐지고 있었다. 고성지역에 확인되는 다양한 역사적 현상들은 조선전기에는 크게 6가지 유형들로 전개되고 있었다. 그것은 (1)왜구관련 및 군사적 방어대책 (2)처벌관련 내용 (3)자연재해 관련 (4)고성수령임명 및 선정 관련 (5)특산물 및 특이사례 (6)기타이다.

조선후기에서는 8가지 유형들로 펼쳐지고 있었다. 즉 (1)처벌관련 내용 (2)고성백성들의 처지와 구휼 및 창고 관련 (3)고성수령 임명 및 선정 포상 관련 (4)군사적 방어 관련 (5)지방 행정제도와 행정구역 개편 관련 (6)자연현상과 재해 관련 (7)기이(奇異) 관련 (8)기타이다.

조선전기 고성지역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왜구관련 및 군사적 방어대책 부분은 조선 후기까지 지속된 현상이었다. 해안지역이라는 지리적 요인과 직결된 현상이다. 처벌관련 내용도 전, 후기 지속된 현상이었는데 후기에서 확인되는 최다 사례를 보여주는 유형이다. 붕당과 동반된 중앙정치 및 19세기의 역사적 상황과 연관되어 있는 현상이다. 자연재해 관련도 전, 후기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고성수령 임명 및 선정 관련도 전, 후기에서 모두 확인되는 현상이었다. 특산물 및 특이사례 분야에서는 특이사례는 전, 후기 모두 확인되고 있으나 특산물 부분은 전기에서 확인된다. 기타의 사례들은 전, 후기 상이한 내용이 많다. 조선후기 고성지역에서는 지방 행정제도와 행정구역 개편 관련부분과 고성백성들의

처지와 구휼 및 창고 관련 유형에서 특히 구휼부분, 창고 등이 후기에서 주로 확인되는 부분들이었다.

[별표1]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나는 고성관련 기록 상황

(1) 태조

번호	내용
1	금성 현령 김승리(金承理)를 고성으로 귀양보내다(『태조실록』 3권 2년 3월 5일 경술)
2	고성 출신 검교 시중 이승(李崇)의 졸기(『태조실록』 6권 3년 12월 16일 신사)

(2) 정종

번호	내용
1	경상도 고성현에 천구성이 떨어지다(『정종실록』 1권 1년 5월 20일 기축)
2	경상도 고성의 아전이던 남금이 풍해도 경력의 직임을 받다(『정종실록』 2권 1년 7월 10일 무인)
3	경상도 고성 등지의 바닷물이 검붉어져 물고기들이 죽다(『정종실록』 2권 1년 8월 26일 계해)

(3) 태종

번호	내용
1	왜적이 경상도 고성현에 들어오다(『태종실록』 2권 1년 11월 1일 을유)
2	경상도 고성의 박도·번계포 등지에 적조현상이 있었다(『태종실록』 6권 3년 8월 1일 병오)
3	고성의 법천사로 자복사(資福寺)를 대신하게 하다(『태종실록』 14권 7년 12월 2일 신사)
4	조순화를 고성현의 관노로 영속시키다(『태종실록』 17권 9년 6월 11일 임자)
5	경상도 고성 등지에 문무 겸비한 자를 수령으로 차견하도록 하다(『태종실록』 22권 11년 7월 15일 갑술)

6	왜구의 포로가 되었다가 고성으로 도망 온 전득여 등을 요동으로 보낸다(『태종실록』 23권 13년 8월 25일 신미)
7	경진년 병란에 회안군을 지지한 오용권을 고성현에 안치하다(『태종실록』 28권 14년 11월 11일 경술)
8	고성 등지의 현감을 지현사로 삼다(『태종실록』 30권 15년 12월 7일 경오)
9	경상도 고성의 바닷물이 닷새 동안 누른 빛깔로 변하다(『태종실록』 32권 16년 7월 30일 기미)
10	이전(李筮)을 고성에 부처시키다(『태종실록』 36권 18년 7월 16일 갑자)

## (4) 세종

번호	내용
1	장운화의 직첩을 회수하고 고성에 정배하다(『세종실록』 3권 1년 4월 9일 계미)
2	한유문에게 판고성현사 강자명을 잡아오게 하다(『세종실록』 15권 4년 1월 22일 경진)
3	경상도 염초 경차관이 고성 등지의 염초에 대해 보고하다(『세종실록』 19권 5년 1월 9일 신묘)
4	회안의 무리로 고성안치된 오용권의 타처 안치를 불허하다(『세종실록』 20권 5년 6월 18일 정묘)
5	전시귀를 고성으로 귀양보내다(『세종실록』 21권 5년 9월 13일 신묘)
6	충청도 관찰사 황자후를 고성에 귀양보내다(『세종실록』 22권 5년 11월 7일 갑신)
7	일본사신에게 고성에서 들여온 대종을 주다(『세종실록』 23권 6년 3월 23일 기해)
8	고성의 송도역과 거제현까지의 거리가 멀어 오양역을 복구하다(『세종실록』 29권 7년 8월 17일 계미)
9	여산에 안치된 좌의정 이원(李原)의 출신지가 고성이었다(『세종실록』 31권 8년 3월 15일 기유)
10	경상도 고성에서 신백정(新白丁)의 처가 세 쌍둥이를 낳다(『세종실록』 35권 9년 1월 19일 을묘)

11	왜인 좌위문대랑이 고성의 구라량까지 고기잡이를 허가할 것을 청하다(『세종실록』 35권 9년 3월 27일 을묘)
12	경상도 채방 별감 백환이 고성에서 생산된 녹반을 바치다(『세종실록』 36년 9년 5월 22일 기유)
13	서달(徐達)을 고성으로 귀양보내다(『세종실록』 37권 9년 7월 25일 신해)
14	의금부에서 홍양생에게 장형을 집행하고 고성에 귀양보내다(『세종실록』 40권 10년 윤4월 1일 임오)
15	고성현의 아전이 규정 이외의 베를 바치라고 독촉한 내섬시의 일을 처리하다(『세종실록』 40권 10년 5월 12일 계해)
16	경상도 고성 등지의 동철 제련의 난이도와 생산의 다소를 시험토록 하다(『세종실록』 43권 11년 2월 19일 을미)
17	고성에 안치된 오용권의 아내 강씨가 장고(狀告)하다(『세종실록』 44권 11년 5월 28일 계유)
18	예조에서 전국의 영험한 곳에서 제사드리는 것을 국가에서 행하는 치제의 예에 따를 것을 건의하다(『세종실록』 46권 11년 11월 11일 계축)
19	이천(李蕝)이 동·철의 산지를 조사한 것을 보고하다(『세종실록』 46권 11년 12월 23일 을미)
20	경상도와 전라도 일대에서 지진이 발생하다(『세종실록』 48권 12년 4월 18일 정해)
21	왜인 육랑·차랑이 글을 보내 고성포 등지를 내왕하면서 장사하기를 청하다(『세종실록』 49권 12년 9월 24일 임술)
22	권매동(權每同)의 추국에 관련된 자들을 고성 등지에 유배하다(『세종실록』 52권 13년 6월 12일 갑진)
23	김섭(金涉)을 고성으로 귀양을 보내다(『세종실록』 54권 13년 11월 3일 갑자)
24	사천·고성현에 지진이 있었다(『세종실록』 60권 14년 9월 6일 신유)
25	오용권이 『태종실록』에게 득죄하여 고성으로 유배되다(『세종실록』 60권 15년 6월 14일 을미)

26	죄인 오용권을 고성에 안치하게 하다(『세종실록』 60권 15년 6월 28일 기유)
27	대마도의 종무직이 고성으로 도망간 노비의 송환을 청하다(『세종실록』 61권 15년 8월 6일 병술)
28	조순화가 죄로 몰입되어 고성의 관노가 되다(『세종실록』 68권 17년 4월 4일 을사)
29	경상도 고성에 사는 전 보령현감 정치(鄭蓄)가 상언하다(『세종실록』 68권 17년 4월 16일 정사)
30	오용권을 예전대로 고성에 안치하게 하다(『세종실록』 72권 18년 4월 22일 무오)
31	굶주린 왜인들을 고성 등지에 정박시켜 구휼하게 하다(『세종실록』 76권 19년 3월 1일 신묘)
32	고성현의 상박도·하박도·육질도에서 제사지내는 법식을 제정하다(『세종실록』 76권 19년 3월 13일 계묘)
33	종정성에 글을 보내 고성과 구량포에서 고기잡는 것이 불가하다고 하다(『세종실록』 83권 20년 10월 18일 기사)
34	병조에서 고성현 해평곶 목장의 경영에 대해 보고하다(『세종실록』 86권 21년 7월 6일 임자)
35	고성현 사람 김경(金敬)의 아내가 한 번에 세 아들을 낳다(『세종실록』 89권 22년 6월 2일 임신)
36	사헌부에서 지고성현사 강권선의 재임명을 건의하다(『세종실록』 91권 22년 10월 17일 병술)
37	지고성현사 이원손 등이 사조(辭朝)하다(『세종실록』 91권 22년 11월 17일 병진)
38	지고성현사 황혁 등이 하직하다(『세종실록』 92권 23년 2월 10일 정축)
39	고성 등지에 읍성을 쌓을 것을 건의하다(『세종실록』 97권 24년 7월 20일 무인)
40	경상도 관찰사가 고성현령의 보고에 의거 적변을 보고하다(『세종실록』 106권 26년 9월 16일 신묘)
41	의정부에서 고성 등 지역의 전제를 고쳐 상정할 일과 개혁할 조건을 상신하다(『세종실록』 109권 27년 7월 13일 을유)

42	본관이 고성인 지중추원사 이중지의 졸기(『세종실록』 111권 28년 2월 3일 신축)
43	고성 등 여러 지역의 공법 폐단과 방책에 관한 성균 주부 이보흠의 상소문(『세종실록』 113권 28년 7월 2일 무진)
44	고성 등 여러 고을을 상긴, 중긴, 하긴으로 구분하여 무관을 차등 있게 두도록 하다(『세종실록』 117권 29년 9월 4일 계사)
45	술주정 하다 사람을 죽인 황계령 이해를 고성에 안치하다(『세종실록』 118권 29년 10월 3일 신유)
46	안승선을 율에 따라 고성현에 옮겨 유배하다(『세종실록』 120권 30년 6월 18일 임신)
47	고성에 유배한 안승선을 율에 따라 처벌할 것을 청하다(『세종실록』 120권 30년 6월 27일 신사)
48	고성현을 비롯한 여러 지역의 소나무 감독 관리에 대해 상신하다(『세종실록』 121권 30년 8월 27일 경진)
49	고성에 부처한 이해가 성경할 때 역로 폐단이 없게 하라고 하다(『세종실록』 150권 30년 12월 3일 을묘)
50	지리지/경상도/고성현 (『세종실록』 150권)

(5) 문종

번호	내용
1	고성현 사람이 우도에서 왜적을 만나 살해당하다 (『문종실록』 1권 즉위년 5월 5일 무신)
2	의정부에서 봄 · 가을에 1도의 1도회에서 염초를 구워내도록 보고하다(『문종실록』 3권 즉위년 9월 19일 경신)
3	거제현의 읍성을 쌓는데 고성 당포와의 관련을 상언하다(『문종실록』 7권 1년 5월 6일 계묘)
4	정분이 경상도 고성 등 여러 지역의 규식에 맞지 않는 성자에 대해 계문하다 (『문종실록』 9권 1년 9월 5일 경자)
5	고성현에 유배되었던 좌참찬 안승선의 졸기(『문종실록』 13권 2년 4월 14일 무인)

## (6) 단종

번호	내용
1	정분이 종사관을 파견해 고성 등 지역의 축성하는 일을 감독하게 할 것을 청하다(『단종실록』 2권 즉위년 8월 1일 신유)
2	사천 도회소의 고성 등지에서 만드는 군기의 액수를 정하기를 청하다(『단종실록』 6권 1년 6월 9일 갑오)
3	조수량을 곳에 안치하는 등 이용의 당을 처벌하다(『단종실록』 8권 1년 10월 11일 갑오)
4	대마주 경차관이 가지고 가는 사목에 고성 구죄량 등에 관한 내용을 넣다(『단종실록』 12권 2년 12월 7일 계미)
5	경상도 관찰사 황수신이 고성 등지의 방수할만한 곳을 보고하다(『단종실록』 12권 3년 윤6월 5일 기유)

## (7) 세조

번호	내용
1	병조에서 경상도 고성 등지에 거진을 설치하고 인근 고을을 익에 분속시킬 것을 청하다(『세조실록』 2권 1년 9월 11일 계미)
2	경상도 고성 등의 읍성에 군사를 보내 지키게 할 것을 청하다(『세조실록』 5권 2년 12월 25일 경신)
3	경상우도의 고성 등지에 대한 방비책을 보고하다(『세조실록』 9권 3년 9월 27일 무자)
4	병조의 건의로 경상도 고성 등지에 거진을 설치하다(『세조실록』 9권 3년 10월 20일 경술)
5	사천 · 고성 등 고을 수령이 군기를 만들며 음주한 것을 몰래 알리다(『세조실록』 14권 4년 11월 7일 신묘)
6	의금부에 정난 이후 난신에 연좌된 사람들에 대한 처분을 명하다(『세조실록』 16권 5년 6월 18일 무진)
7	경상도 고성의 유연 등을 놓아 보내다(『세조실록』 16권 5년 6월 18일 무진)
8	관노에 영속된 환자인 무주의 정준 등에 대한 처분을 의금부에 명하다(『세조실록』 16권 5년 6월 27일 정축)

9	병조에서 경상도 고성 등지의 방어하는 일을 보고하다(『세조실록』 17권 5년 7월 17일 병신)
10	경상도 고성 등 여러 고을에 지진이 일어난다(『세조실록』 26권 7년 12월 29일 을미)
11	최유람이 고성현감에서 의금부 진무로 옮긴 지 몇 년이 안되어 당상관이 되었다(『세조실록』 34권 10년 8월 21일 임인)
12	난을 도모한 자들을 고성 관노 등으로 삼다(『세조실록』 35권 11년 4월 19일 을미)
13	병조에서 고성 등 여러 고을의 군기를 상정하여 보고하다(『세조실록』 39권 12년 7월 12일 신사)
14	경상도 고성 사람 주치민 등이 상언하다(『세조실록』 39권 12년 8월 21일 경신)
15	예조에서 대마주 태수에게 왜인이 고성현 백성을 겁탈한 사실 등의 내용을 알리다(『세조실록』 41권 13년 2월 13일 기유)

(8) 예종

번호	내용
1	명나라에서 군사를 징발할 것을 예상하여 고성의 문맹손 등 무사를 징발하다(『예종실록』 3권 1년 1월 6일 신유)
2	역적 이시애의 연좌인을 고성 등지의 극변에 유배시키게 하다(『예종실록』 3권 1년 2월 1일 병술)
3	난신의 처첩과 자녀들을 고성 등 여러 고을의 노비로 영속시키다(『예종실록』 3권 1년 2월 3일 무자)

(9) 성종

번호	내용
1	사복시 제조가 고성 등 갖지에서 기르는 마소의 숫자를 보고하다(『성종실록』 2권 1년 1월 4일 계미)
2	병조에서 경상도 고성 등지의 군액 및 분번할 수와 감액할 수 등을 보고하다(『성종실록』 3권 1년 2월 30일 기묘)
3	전 현감 이지치를 고성현령으로 이임하다(『성종실록』 6권 1년 7월 28일 갑진)

4	고성에 안치한 노지를 상주 근처로 이치하게 하다(『성종실록』 10권 2년 4월 4일 병오)
5	형조에서 고성의 죄수 김여·박인수 등의 죄를 보고하다(『성종실록』 10권 2월 5월 21일 기사)
6	고성 현령 이귀미가 하직하다(『성종실록』 10권 2년 6월 12일 계축)
7	고성 현령 이지치의 전취에 대해 유시하다(『성종실록』 10권 2년 6월 15일 병진)
8	고성의 죄수 사노 천만 등을 율에 따라 처벌하다(『성종실록』 11권 2년 7월 13일 갑신)
9	고성 현령 등을 역임한 수성군 최유림의 즐기(『성종실록』 11권 2년 8월 28일 무진)
10	병조에서 경상도 고성 등의 군액 감소 계획을 올리니 받아들이다(『성종실록』 15권 3년 2월 1일 무진)
11	고성현 가조도에 염소를 옮겨 방목하도록 하다(『성종실록』 41권, 5년 4월 1일 을묘)
12	형조에서 명하여 고성 등 지방에 유배된 자들을 방면하게 하다(『성종실록』 41권 5년 4월 17일 신미)
13	고성의 김보원 등 50인이 신역을 피해 달아나 반역을 한 행위에 대해 보고하다(『성종실록』 43권 5년 6월 18일 신미)
14	세종조에 최완이 고성군수가 되어 왜선을 잡았던 일을 거론하다(『성종실록』 47권 5년 9월 11일 계해)
15	대마도로 보낼 발포 적왜의 배를 고성에 옮겨 정박시키다(『성종실록』 47권 5년 9월 23일 을해)
16	고성현에 정박한 발포 적왜의 배를 삼포 왜인이 보게 하다(『성종실록』 47권, 5년 9월 23일 을해)
17	고성현 사람인 행 부호군 이교연의 즐기(『성종실록』 54권 6년 4월 29일 정미)
18	웅천을 도회관으로 하여 고성 등지에서 왜료(倭料)를 거두어 들이자고 요청하다(『성종실록』 55권 6년 5월 5일 계축)
19	경상도 고성 등지의 군수 확보 방안 등을 의논하다(『성종실록』 77권 8년 윤2월 11일 기유)

20	경상도 고성 등지의 군수 비축을 위한 방안을 보고하다(『성종실록』 77권 8년 윤2월 28일 병인)
21	경상도 고성 등지에 출래한 제주 두독야의 감시를 유지하다(『성종실록』 83권 8년 8월 5일 기해)
22	제주 3읍의 많은 사람들이 고성 등지에 와서 거주하다(『성종실록』 85권 8년 10월 25일 기미)
23	고성의 죄수 강자연을 처벌하도록 하다(『성종실록』 101권 10년 2월 4일 신묘)
24	고성에 영속한 김부 등을 놓아주게 하다(『성종실록』 127권 12년 3월 14일 무자)
25	적선이 고성현의 가도 등지에서 우리 민선을 쫓아다니다(『성종실록』 134권 12년 10월 1일 임인)
26	고성에 들어온 왜선을 황효종과 정이의가 방어하지 못했다고 보고하다(『성종실록』 150권 14년 1월 30일 계해)
27	순찰사 홍응이 경상도 고성 등 도내 여러 포의 보에 대해 보고하다(『성종실록』 176권 16년 3월 25일 병오)
28	홍응이 경상도 고성 등 백성의 호소에 대해 서계를 올리다(『성종실록』 176권 16년 3월 25일 병오)
29	성곽의 수축과 고성의 소비포 등 적의 방비에 대해 보고하다(『성종실록』 187권 17년 1월 16일 계해)
30	고성 현령 하형산이 사조하니 인견하다(『성종실록』 193권 17년 7월 19일 임술)
31	관찰사 손수효가 고성 등 연해의 방수 대책을 보고하다(『성종실록』 197권 17년 11월 22일 계해)
32	고성 지방에서 왜구가 어민을 살해한 일을 보고하다(『성종실록』 212권 19년 윤1월 12일 정축)
33	고성에 왜선이 출몰한 것과 방어책에 대해 보고하다(『성종실록』 216권 19년 5월 10일 계유)
34	고성 등지에 진을 설치하여 불우의 변에 대비할 것을 보고하다(『성종실록』 216권, 19년 5월 25일 무자)
35	정숙이 고성을 군사의 요충지로 활용할 것을 보고하다(『성종실록』 228권, 20년 5월 8일 을축)
36	한성부 우윤 성숙이 고성에 진군을 설치할 것을 아뢰다(『성종실록』 229권, 20년 6월 6일 계사)

37	고성 가배량 등에 진을 설치하기 편리한지 여부를 살펴보게 하다(『성종실록』 233권, 20년 10월 27일 신해)
38	성준을 보내 고성현에 성 쌓을 일을 살펴보게 하다(『성종실록』 234권, 20년 11월 1일 을묘)
39	고성에 수적의 변을 조사하게 하다(『성종실록』 234권, 20년 11월 11일 을축)
40	왜구가 고성을 침략한 일로 좌승지 조위가 국문을 청하다(『성종실록』 271권, 23년 11월 14일 신사)
41	왜적이 고성 지방을 침범한 실정을 알아보도록 지시하다(『성종실록』 271권, 23년 11월 14일 신사)
42	왜적이 고성에 침입한 일로 변장을 국문하게 하다(『성종실록』 271권, 23년 11월 22일 기축)
43	고성 서남면 바닷가에 왜적이 침략하므로 주민이 살지 못하도록 청하다(『성종실록』 272권, 23년 12월 30일 병인)
44	임찬을 고성현령으로 의망할 때에 실수한 것을 처벌할 것을 요청하다(『성종실록』 274권, 24년 2월 30일 을축)
45	왜인의 약탈이 많아지자 고성의 바닷가에 사는 백성을 내지로 옮겨 살게 할 것을 논의하다(『성종실록』 277권, 24년 5월 22일 을유)
46	고성 사람이 왜인에게 피살된 일에 대해 보고하다(『성종실록』 288권, 25년 3월 6일 을미)

## (10) 연산군

번호	내용
1	본관이 고성인 지중추부사 이척의 즐기(『연산군일기』 14권 2년 4월 29일 병오)
2	고성의 경보 등의 일을 들어 상소하다(『연산군일기』 22권 3년 3월 19일 신유)
3	왜추 노이사야문 등이 염포와 고성과의 거리 등을 언급하다(『연산군일기』 22권 3년 4월 25일 병신)
4	동지사 안침이 고성현에 보와 봉화대를 쌓기를 건의하다(『연산군일기』 46권 3년 10월 11일 경술)
5	이극균이 고성현령인 사위 성수재가 호상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청하다(『연산군일기』 52권 10년 1월 19일 신사)

(11) 중종

번호	내용
1	고성현령 안극종을 개차하도록 하다(『중종실록』 2권 2년 4월 5일 무인)
2	고성의 백성 허원필이 수령의 파직을 거두어 줄 것을 호소하다(『중종실록』 2권 2년 4월 12일 을유)
3	지평 이사균 등이 고성 · 창녕 현감을 두둔한 일로 유자광을 탄핵하다(『중종실록』 2권 2년 4월 13일 병술)
4	고성과 창녕의 수령을 파직한 것을 두고 유자광을 탄핵하다(『중종실록』 2권 2년 4월 13일 병술)
5	고성과 창녕의 수령을 파직한 것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다(『중종실록』 2권 2년 4월 13일 병술)
6	유자광이 시폐를 아뢰며 고성 · 창녕 수령에 대해 말하다(『중종실록』 2권 2년 4월 13일 병술)
7	고성과 창녕의 수령을 파직한 일과 관련하여 유자광이 상차하다(『중종실록』 2권 2년 4월 13일 병술)
8	고성과 창녕의 수령을 파직한 일과 관련하여 유자고야이 죄받기를 청하는 차자를 올리다(『중종실록』 2권 2년 4월 16일 기축)
9	경상도 관찰사가 고성의 유학 노필 등을 재행이 뛰어난 자로 장계하다(『중종실록』 6권 3년 5월 14일 신해)
10	대사헌 홍숙이 안극종의 품계와 관직을 고칠 것을 요청하다(『중종실록』 10권 5년 2월 1일 정해)
11	고성현령 윤효빙 등이 부산포 · 제포가 왜구에게 함락되었음을 보고하다(『중종실록』 11권 5년 4월 8일 계사)
12	고성현령 윤효빙 등이 왜구와 접전한 것에 대해 치계하다(『중종실록』 11권 5년 4월 11일 병신)
13	도원수 유순정에게 고성현령 윤효빙 등의 일을 처리하도록 하다(『중종실록』 11권 5년 4월 19일 갑진)
14	왜인이 고성과 사랑 등에 들어와 약탈을 자행하다(『중종실록』 11권 5년 4월 21일 병오)
15	유순정이 거제 · 고성 등 왜적의 피해를 입은 곳의 방비책을 보고하다(『중종실록』 11권 5년 5월 24일 무인)
16	고성과 진해 등의 남방 방어를 위한 방안을 보고하다(『중종실록』 11권 5년 6월 25일 기유)
17	고성현령 윤효빙의 처벌을 논하다(『중종실록』 11권 5년 7월 25일 기묘)
18	고성 등 고을의 수령 파직을 청하다(『중종실록』 12권 5년 11월 10일 임술)

19	정언 박전이 경상도의 고성 등 변방 사정을 보고하다(『중종실록』 14권 6년 10월 2일 기묘)
20	고성현령 박훈을 동래현령과 교체하다(『중종실록』 14권 6년 11월 26일 임신)
21	진주 · 함안 · 고성 등에 뇌성이 일고 연기가 일다(『중종실록』 17권 8년 1월 29일)
22	왜적의 침입에 대비 거제와 고성 등지의 방비를 강화하다(『중종실록』 19권 8년 11월 2일 병인)
23	경상도 고성과 거제 등지에 큰 바람이 불고 비가 와서 곡식이 손상되다(『중종실록』 22권 10년 6월 4일 기미)
24	거제 · 고성 등에 배꽃이 피다(『중종실록』 26권 11년 9월 6일 갑신)
25	문폐사 한효완이 문경과 고성 등에 풍재가 심하다고 보고하다(『중종실록』 11년 9월 7일 을유)
26	예조가 이방석의 후손 고성군에 대해 보고하다(『중종실록』 26권 11년 11월 27일 갑진)
27	경상도 영천 등지에서 앵두꽃과 배꽃이 피다(『중종실록』 29권 12년 9월 7일 경진)
28	고성 사람 안중손의 청빈과 근실함을 보고하다(『중종실록』 29권 12년 9월 13일 병술)
29	헌부에서 고성 수령을 역임한 고자겸을 탄핵하다(『중종실록』 29권 12년 9월 26일 기해)
30	고성과 문의에 지진이 있었다(『중종실록』 31권 12년 윤12월 10일 신사)
31	경상도 관찰사 김안국이 고성에 사는 유학 노필 등을 천거하다(『중종실록』 32권 13년 3월 26일 을축)
32	경상도 김해 · 고성 · 진해 등에 지진이 일어나 집이 흔들리다(『중종실록』 34권 13년 11월 15일 신해)
33	경상도 진해 · 고성 · 곤양 · 삼가 · 하동 등에 큰 비와 바람이 불다(『중종실록』 36권 14년 7월 17일 무신)
34	경상도 상주 · 고성 · 진해에 지진이 있었다(『중종실록』 39권 15년 6월 3일 기미)
35	사헌부가 조방장 원평조 · 고성 현령 이해의 일을 보고하다(『중종실록』 45권 17년 7월 25일 기사)
36	경상도 고성 · 밀양 등지에 천둥이 있었다(『중종실록』 46권 17년 11월 18일 경신)
37	팔도 관찰사에 고성의 용수암 등 기우를 지내 응답이 있는 곳에 치제하게 하다(『중종실록』 59권 22년 5월 29일 을사)
38	경상도 고성 등 19고을 에 천둥이 쳤다(『중종실록』 59권 22년 11월 22일 병신)
39	경상도 함안 · 고성 등에 벌레가 생겨 벼를 해치다(『중종실록』 69권 25년 9월 15일 신축)

40	고성의 용수암과 벽산 등 팔도 각지에서 기우제를 지내도록 유서를 내리다(『중종실록』 70권 26년 5월 17일 경자)
41	경상도 진휼경차관 황헌이 김해 · 고성 등지의 흉황에 대해 보고하다(『중종실록』 75권 28년 6월 21일 임진)
42	경상도 고성현 유방산에 천등과 함께 소나기가 쏟아지다(『중종실록』 87권 33년 7월 3일 갑술)
43	당포 만호 최감을 고성에 가두도록 하다(『중종실록』 90권 34년 4월 27일 갑자)
44	고성현령 최환을 진급시키다(『중종실록』 93권 35년 6월 27일 정해)
45	과선하고 살아서 돌아온 정의문 · 오연경 등을 고성에 수감하다(『중종실록』 97권 36년 12월 30일 신사)
46	고성 현령 최환과 사천 현감 배수광을 가자하여 포상하다(『중종실록』 98권 37년 윤5월 2일 신해)
47	호조가 고성의 철물과 동래 후추의 진상 문제를 보고하다(『중종실록』 98권 37년 윤5월 6일 을묘)
48	어득강이 고성에 있을 때 생사당 설립을 중지하게 한 일 등을 상소하다(『중종실록』 98권 37년 7월 27일 을해)
49	고성 백성이 여역으로 죽은 사람이 1백명이나 되다(『중종실록』 102권 39년 3월 20일 무오)
50	왜구가 성을 포위했을 때 고성 현령 봉귀달 등의 행적에 대해 보고하다(『중종실록』 102권 39년 4월 18일 병술)
51	사랑에 적변이 있을 때 고성 현령 봉귀달 등의 행적에 대해 논의하다(『중종실록』 104권 39년 7월 14일 신해)
52	과선한 배에서 살아 돌아온 자들을 고성에 고을에 구류하다(『중종실록』 104권 39년 8월 20일 병술)
53	사랑 왜변과 관련 고성현령 봉귀달 등의 행적에 대해 논의하다(『중종실록』 104권 39년 9월 12일 무신)
54	순변 체찰사 이기가 고성 등지의 방비책을 보고하다(『중종실록』 104권 39년 9월 18일 갑인)
55	가덕도 축성사 방호의가 고성 등지의 방비책에 대해 복명하다(『중종실록』 104권 39년 9월 26일 임술)

## (12) 명종

번호	내용
1	김저를 고성에 안치하다(『명종실록』 4권 1년 8월 6일 경인)
2	경상도 고성에 벼를 굶아먹는 백충이 생기다(『명종실록』 6권 2년 7월 10일 기미)
3	경상도 함안 · 고성 등에 지진이 일어난다(『명종실록』 20권 11년 2월 9일 무술)
4	예조가 고성진무 이세응 등의 효열에 대해 정표하고 복호하는 일을 보고하다(『명종실록』 25권 14년 4월 1일 임인)
5	경상도 고성 등에 우박이 내리다(『명종실록』 25권 14년 4월 14일 을묘)
6	고성에서 왜적을 잡을 때 중국인 30명이 피살되다(『명종실록』 26권 15년 8월 14일 정미)
7	경상도 고성 등지의 수해를 구황할 것을 호조에 이르다(『명종실록』 28권 17년 9월 6일 정해)

## (13) 선조

번호	내용
1	경상도감사가 고성 등지의 수재를 당한 고을들을 보고하다(『선조실록』 19권, 18년 9월 9일 병자)
2	고성에서 흰 꿩 등이 나온 일을 보고하다(『선조실록』 25권, 24년 5월 1일 을축)
3	좌의정 이덕형이 사천과 고성 등 수군의 활약상을 보고하다(『선조실록』 106권, 31년 11월 27일 무신)
4	정기룡을 우도방어사로 임명하여 고성에 주둔할 것 등을 건의하다(『선조실록』 107권, 31년 12월 24일 을해)
5	고성현령이 중국군을 접대하다 농사를 망친 실정을 보고하다(『선조실록』 126권, 33년 6월 13일 갑신)
6	태풍으로 인한 선박의 파손에 대해 고성에 있는 전선으로 사변에 대처하도록 하다(『선조실록』 127권, 33년 7월 3일 갑진)
7	경상 감사 김신원이 고성 · 경주 등의 폭풍 피해에 대해 보고하다(『선조실록』 127권, 33년 7월 24일 을축)
8	체찰사 이덕형과 국방 문제 전반에 대해 논의하다(『선조실록』 133권, 34년 1월 17일 병진)
9	고성 현감이 첩정으로 큰바람이 불고 비가 내렸다고 알리다(『선조실록』 138권, 34년 6월 5일 신미)

10	윤우를 고성현령으로 제수하다(『선조실록』 144권, 34년 12월 16일 기묘)
11	일본에 포로로 갔다 도망해 온 한찬이 고성의 적진에 잠입하였던 일 등을 진술하다(『선조실록』 160권, 36년 3월 24일 경진)
12	거제의 옛 군영을 지키는 방책과 고성을 버리는 것에 대해 보고하다(『선조실록』 176권, 37년 7월 25일 갑술)
13	병소에서 최강 등 무신에게 상전을 베풀 것을 건의하다(『선조실록』 191권, 38년 9월 24일 을미)
14	최강을 경상수사 관직에 제수하다(『선조실록』 199권, 39년 5월 15일 임오)
15	좌수사 최강이 치보한 것을 삼도 통제사 이운룡이 치계하다(『선조실록』 200권, 39년 6월 21일 무오)
16	좌수사 최강이 치보한 것을 통제사 이운룡이 치계하다(『선조실록』 201권, 39년 7월 6일 계유)
17	고성 현령 이연선을 삭거사관하다(『선조실록』 201권, 39년 7월 16일 계미)
18	조형도를 고성현령에 제수하다(『선조실록』 201권, 39년 7월 20일 정해)
19	왜인 굴왜가 올 때 고성현령 조형도 등에게 군용의 위의를 보이도록 하다(신조 205권, 39년 11월 8일 계유)
20	좌병사 정기룡, 좌수사 최강이 굴지정에게 서계를 봉정하고 헌부하게 하다(『선조실록』 205권, 39년 11월 12일 정축)
21	고성현령 조형도 등을 파직시키다(『선조실록』 206권, 39년 12월 21일 을묘)
22	고성현령을 지낸 나대용이 상소한 내용중 창선을 건조하여 쓸 것인지를 시험하게 하다(『선조실록』 206권, 39년 12월 24일 무오)
23	간원에서 경상도 좌수사 최강의 파직을 요청하다(『선조실록』 212권, 40년 6월 29일 경신)
24	간원에서 최강을 잡아 국문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윤희하지 않다(『선조실록』 212권, 40년 6월 30일 신유)
25	영의정 박순의 즐기에 이달 등이 문인이었음을 기록하다(『선조수정실록』 23권, 22년 7월 1일 병오)
26	정여립의 시체를 군기시 앞에서 추형케 하다(『선조수정실록』 23권, 22년 10월 1일 을해)

## (14) 광해군

번호	내용
1	최강이 현임 별장으로서 방호를 삼가지 않았다 하여 국문하게 하다(『광해군일기』 6권, 즉위년 7월 2일 병술)
2	거제·고성 등지에서 발생한 돌풍으로 인한 피해 등에 대해 아뢰다(『광해군일기』 19년, 1년 8월 10일 무오)
3	최강의 공초를 받다(『광해군일기』 66권, 5년 5월 17일 갑술)
4	김질·김현·최강 등을 방면하게 하다(『광해군일기』 67권, 5년 6월 11일 무술)
5	심광세를 고성으로 정배하다(『광해군일기』 69권, 5년 8월 19일 갑진)
6	사헌부가 고성현령 최급 등의 파직을 청하다(『광해군일기』 [중초본] 174권, 14년 2월 8일 갑술)
7	무기를 마련한 고성 현령 최급 등에게 논상을 청하다(『광해군일기』 184권, 14년 12월 9일 경오)
8	사헌부가 수탈을 일삼는 고성현령 최급 등의 파직을 청하다(『광해군일기』 [정초본] 174권, 14년 2월 8일 갑술)

## (15) 인조

번호	내용
1	경상도 고성의 민가에서 암탉이 수탉으로 변하다(『인조실록』 8권, 3년 2월 1일 경진)
2	고성현에서 송아지의 발굽이 말 발굽으로 변하다(『인조실록』 8권, 3년 2월 10일 기축)
3	경상도 고성 등지에 많은 우박이 내리다(『인조실록』 20권, 7년 윤4월 29일 갑신)
4	사복시에서 고성의 해평장 등의 말을 환속시킬 것을 요청하다(『인조실록』 22권, 8년 2월 13일 계해)
5	고성 토호들을 처벌하도록 하다(『인조실록』 30권, 12년 9월 9일 임술)
6	경상도 고성·사천 등지의 양전을 다시 하게 하다(『인조실록』 31권, 13년 3월 19일 기사)
7	사헌부가 고성 등지의 둔전을 빙자한 세금 포탈에 대해 조사를 의뢰하다(『인조실록』 31권, 13년 7월 13일 신유)

8	경상도 고성현에서 돌이 움직이다(『인조실록』 32권, 14년 1월 26일 임신)
9	창원·고성 등지에서 진보 설치 등에 대해 보고하다(『인조실록』 36권, 16년 1월 15일 기묘)
10	한인에게 사로잡혔던 고성의 군인 박계룡을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다(『인조실록』 45권, 22년 7월 28일 계축)
11	고성현의 박망남의 처가 한꺼번에 딸 셋을 낳다(『인조실록』 47권, 24년 5월 27일 임신)

(16) 현종

번호	내용
1	경상도 김해·고성 등지에 지진이 일어나다(『현종실록』 13권, 8년 4월 9일 계축)
2	영남 김해·고성 등지에 지진이 일어나다(『현종개수실록』 17권, 8년 4월 9일 계축)

(17) 숙종

번호	내용
1	고성현에 우박이 내리다(『숙종실록』 9권, 6년 3월 13일 임신)
2	고성에 머리 하나에 눈이 하나인 병아리가 났다(『숙종실록』 14권, 9년 4월 17일 기축)
3	고성에 귀양갔던 전 좌의정 조사석의 즐기(『숙종실록』 25권, 19년 12월 24일 계사)
4	업동을 고성에 정비하다(『숙종실록』 30권, 22년 7월 29일 계미)
5	부수찬 박필명을 고성 현령을 삼았다가 바로 중지하다(『숙종실록』 38권, 29년 11월 5일 병오)
6	정언 김만근을 고성현령에 제수하다(『숙종실록』 39년, 30년 6월 30일 무술)
7	김만근을 고성현령으로 임명한 지시의 환수를 요청하다(『숙종실록』 39년, 30년 7월 1일 기해)
8	대신과 비국의 신하를 불러 고성 현령 김만근 등의 일을 의논하다(『숙종실록』 39권, 30년 7월 15일 계축)
9	헌부에서 고성 현령 이태현의 곡물 횡령을 보고하고 파직을 청하다(『숙종실록』 45권, 33년 8월 5일 갑신)
10	고성에 귀양갔던 전 좌의정 조사석의 즐기(『숙종보궐실록』 25권, 19년 12월 24일 계사)

## (18) 경중

번호	내용
1	윤정주를 고성에 위리안치하다(『경중실록』 8권, 2년 5월 4일 무자)
2	박치원을 고성현에 귀양보내다(『경중실록』 10권, 2년 10월 9일 신유)
3	박치원을 고성현에 찬배하다(『경중실록』 수정 3권, 2년 10월 6일 무오)

## (19) 영조

번호	내용
1	목시룡이 목호룡의 일에 연좌되어 고성현에 종이 되다(『영조실록』 3권, 1년 2월 22일 경인)
2	고성에 있는 대원군의 화상을 간심하게 하다(『영조실록』 21권, 5년 3월 21일 을축)
3	사헌부에서 고성 현령 신월을 개차하도록 요청하다(『영조실록』 23권, 5년 윤7월 8일 경진)
4	사헌부에서 고성 현감 이만홍의 관직을 고치자고 청하다(『영조실록』 28권, 6년 10월 14일 기유)
5	고성현감 이만홍의 일을 정계하다(『영조실록』 28권, 6년 11월 24일 기축)
6	경상도 고성·울산 등의 고을에 천둥이 치다(『영조실록』 30권, 7년 11월 25일 갑신)
7	고성현의 법천사에서 있다는 덕흥 대원군 화상의 진위를 살피게 하다(『영조실록』 31권, 8년 5월 16일 임신)
8	고성의 수령 이봉명을 파직시키다(『영조실록』 31권, 8년 6월 22일 정축)
9	경상도 고성·의령 등의 충재가 있었다(『영조실록』 35권, 9년 8월 5일 계축)
10	옥당에서 고성 현령 이하연의 교체를 청하다(『영조실록』 56권, 18년 10월 17일 임인)
11	관곡을 유용한 전 고성 현감 신사민을 유배하다(『영조실록』 64권, 22년 12월 21일 임오)
12	헌부에서 고성 현령 이희춘을 교체를 청하다(『영조실록』 69권, 25년 3월 27일 을해)
13	경상감사 민백상이 고성의 구소비 등 각진의 혁파 대책에 대해 상소하다(『영조실록』 73권, 27년 1월 3일 신축)

14	영남 이정사 민백상이 고성이 객전 폐단 등에 대해 보고하다(『영조실록』 81권, 30년 1월 24일 갑술)
15	호남 이정사 이성중이 환곡의 폐단을 보고하다(『영조실록』 81권, 30년 4월 29일 무신)
16	고성 현령 심관을 노모 봉양을 위해 체차하다(『영조실록』 81권, 30년 5월 23일 신축)
17	고성현의 종이 된 김윤홍을 제주목으로 이배하다(『영조실록』 83권, 31년 3월 1일 갑술)
18	고성의 선창을 도선 앞 바다로 옮기다(『영조실록』 99권, 38년 2월 3일 정묘)
19	임의로 곡식을 내어 기민을 진구한 영남 어사 김종정을 파직하다(『영조실록』 99권, 38년 5월 8일 신축)
20	고성 현령 정운제를 파직하다(『영조실록』 99권, 38년 5월 8일 신축)
21	심이지를 거제에서 고성으로 옮겨 정배하다(『영조실록』 107권, 42년 8월 5일 임인)
22	김치공이 거제·고성 등의 진휼에 대해 보고하다(『영조실록』 111권, 44년 10월 20일 갑술)
23	윤석주가 전 고성 현령 정필신의 불법에 대해 상소하다(『영조실록』 118권, 48년 3월 5일 경자)
24	지평 황택인이 고성현령 정여익의 파직 등을 청하다(『영조실록』 121권, 49년 10월 8일 계사)
25	고성 유생 이봉징이 시폐와 백성의 고통을 상소하다(『영조실록』 123권, 50년 8월 29일 경술)

(20) 정조

번호	내용
1	고성의 백성이 상언한 내용을 조사하게 하다(『정조실록』 2권, 즉위년 8월 22일 신유)
2	영남의 고성 등 많은 지역의 진휼을 마치다(『정조실록』 7권, 3년 5월 29일 임자)
3	영남 고성 등 지역의 진구를 마치다(『정조실록』 13권, 6년 6월 4일 기사)
4	양형이 공초에서, 정미년에는 고성 등지에 수재가 있을 것이라는 문광점의 글을 언급하다(『정조실록』 19권, 9년 3월 1일 경술)
5	목호룡과 유봉휘의 처속을 고성에서 절도로 이배하다(『정조실록』 20권, 9년 6월 19일 병신)
6	암행 어사 이서구가 고성의 군역 폐단 등을 보고하고, 고성의 한녀(韓女)에게 정려하다(『정조실록』 23권, 11년 5월 4일 경오)

7	영남 고성 등 여러 지역이 진휼을 마치다(『정조실록』 23권, 11년 5월 23일 기축)
8	진해현감 민수익이 고성의 검임으로 통제사를 만나러 온 사실을 언급하다(『정조실록』 23권, 11년 6월 5일 신축)
9	고성의 수령을 지낸 민창혁의 종형제인 전라도 관찰사 민태혁을 파직시키다(『정조실록』 30권, 14년 4월 29일 기묘)
10	관찰사 이조원이 고성 등지의 민고에 대해 보고하다(『정조실록』 30권, 14년 5월 26일 병오)
11	헌납 권희가 영남 고성 등지의 민폐에 대해 보고하다(『정조실록』 31권, 14년 8월 20일 무진)
12	관찰사 이조원이 고성 등지의 환곡 폐단 등을 보고하다(『정조실록』 32권, 15년 4월 5일 기유)
13	고성 현령 임무원을 추고하다(『정조실록』 33권, 15년 12월 23일 계해)
14	진주와 고성에 해창을 설치하다(『정조실록』 34권, 16년 윤4월 4일 임신)
15	고 목사 제말에게 시호를 내리고 그의 조카 제홍로에게 추증하고 정표하도록 한다(『정조실록』 35권, 16년 7월 25일 임술)
16	고성에 묘소가 있는 제홍록의 비문을 써올리게 하다(『정조실록』 35권, 16년 9월 20일 병진)
17	제말·공서린·이의정 등에게 시호를 내리다(『정조실록』 35권, 16년 9월 29일 을축)
18	영남 고성 등지의 진휼 정사가 끝나다(『정조실록』 37권, 17년 6월 1일 임술)
19	성주 목사 제말에게 정표하고 추증한 일을 거론하다(『정조실록』 38권, 17년 7월 27일 무오)
20	영남 고성 등 23개 고을의 조세를 견감해주고 윤음을 내리다(『정조실록』 41권, 18년 11월 2일 병술)
21	영남 위유사 이익운이 고성 등지의 환곡 폐단 등에 대해 보고하다(『정조실록』 41권, 18년 12월 30일 계미)
22	충장공 제말의 후손에게 무검에 단부하는 등의 특전을 하교하다(『정조실록』 42권, 19년 윤2월 26일 무신)
23	영남 고성현 등지에서의 진휼을 마치다(『정조실록』 42권, 19년 5월 8일 무오)
24	영남 암행어사 유경이 고성 현령 정택창 등의 죄를 보고하다(『정조실록』 42권, 19년, 6월 4일 계미)
25	통제사 윤득구가 전선과 병선의 조운 변통에 관한 조례를 올리다(『정조실록』 48권, 22년 1월 21일 병술)
26	영남 고성 등지에서 기민을 진휼하는 일을 마치다(『정조실록』 48권, 22년 5월 7일 경오)

27	임란 때의 충신인 충장공 제말을 성주의 충렬사에 제향토록 하다(『정조실록』 49권, 22년 9월 1일 신유)
28	임란 때의 충신인 제홍록 등을 사우에 제향하는 일이 대해 의논하다(『정조실록』 49권, 22년 9월 1일 신유)
29	관찰사 신기가 고성 등지 토산물 진상 폐단에 대해 보고하다(『정조실록』 51권, 23년 4월 19일 정미)
30	영남 고성 지역 등에서 진휼을 실시하다(『정조실록』 51권, 23년 5월 23일 경진)
31	고성 수령 사건 등에 대해 국법을 엄중히 적용하라고 하다(『정조실록』 54권, 24년 5월 6일 정해)
32	『정조실록』 대왕 행장(行狀)

(21) 순조

번호	내용
1	사학 죄인 신여권을 고성현에 작처하다(『순조실록』 3권, 1년 11월 5일 무인)
2	암행 어사 정만석이 고성현령 민중혁 등의 잘못을 논핵하다(『순조실록』 4권, 2년 6월 17일 병진)
3	미국에서 고성의 둔토를 광주에 소속시키는 일 등에 관해 보고하다(『순조실록』 4권, 2년 9월 12일 경진)
4	고성현의 익사자에게 흉전을 지급하다(『순조실록』 10권, 7년 2월 15일 정해)
5	평안 감사가 제말의 후선 제경옥 등의 출정에 대해 보고하다(『순조실록』 15권, 12년 1월 3일 정축)
6	제말에게 시호를 내리고 연시의 비용을 돕도록 하다(『순조실록』 15권, 12년 1월 22일 병신)
7	좌의정 김재찬이 신도 첨사 제경옥 등의 공을 보고하다(『순조실록』 15권, 12년 1월 19일 계사)
8	예조에서 고성의 백봉래 등 경외의 충·효·열의 문서를 보고하다(『순조실록』 15권, 12년 3월 13일 을유)
9	고성의 이덕로 등 효자·열녀·효부 등에게 정려하고 부역을 면제케 하다(『순조실록』 17권, 13년 8월 28일 임술)
10	예조에서 고성의 최균 등 효행·군공 등에 대해 포상할 것을 청하다(『순조실록』 19권, 16년 6월 8일 병진)

## (22) 현종

번호	내용
1	암행 어사 김기찬이 전 고성 현령 이희정 등을 처벌할 것을 요청하다(『현종실록』 9권, 8년 8월 26일 임인)

## (23) 철종

번호	내용
1	암행어사 이종순이 고성현령 박광진 등을 처벌할 것을 보고하다(『철종실록』 6권, 5년 8월 21일 정사)

## (24) 고종

번호	내용
1	고성현의 수재를 당해 죽은 사람들에게 홀전을 베푼다(『고종실록』 1권, 1년 4월 12일 임오)
2	통제사 이봉주가 고성 등 16개 고을의 재난 정형을 보고하다(『고종실록』 2권, 2년 9월 3일 을축)
3	고성현령 윤석오 등에게 가자하라고 명한다(『고종실록』 3권, 3년 5월 16일 갑술)
4	고성현의 수재를 당해 죽은 사람에게 홀전을 베푼다(『고종실록』 4권, 4년 11월 23일 임신)
5	고성 등지의 소나무를 베는 자에 대해 처벌하도록 한다(『고종실록』 5권, 5년 5월 19일 을미)
6	호적 대장 작성과 관련하여 고성현령의 처벌을 요청하다(『고종실록』 6권, 6년 8월 27일 병인)
7	고성현에서 소란을 일으킨 죄인을 형배하도록 한다(『고종실록』 6권, 6년 12월 16일 계축)
8	통제사가 고성 현령을 판관 겸 종사관 겸임할 것을 청하다(『고종실록』 7권, 7년 5월 14일 기묘)
9	고성의 고을 소재지 옮기는 것 등을 보고하다(『고종실록』 7권, 7년 6월 29일 갑자)
10	고성 현령을 부사로 승격시키고 통영 종사관을 겸임시키다(『고종실록』 7권, 7년 8월 25일 기미)

11	고성의 모든 사무를 통영에서 담당토록 하다(『고종실록』 7권, 7년 윤10월 10일 임신)
12	고성의 삼정에 관한 정사에 대해 보고하다(『고종실록』 7권, 7년 12월 3일 갑자)
13	고성부의 군사 자재와 월과전을 통영에서 관할하도록 하다(『고종실록』 7권 12월 4일 을축)
14	고성의 옛 고을에 특별히 수방장을 두다(『고종실록』 8권, 8년 2월 4일 갑자)
15	증 이조판서 최균을 의민공으로 삼는 등 시호를 추증하다(『고종실록』 8권, 8년 3월 16일 병오)
16	고성의 총렬사 등 47개 서원만 남기고 나머지는 철폐하다(『고종실록』 8권, 8년 3월 20일 경술)
17	고성부를 옮기는데 공이 있는 부사 유기동을 포상하다(『고종실록』 8권, 8년 7월 29일 정사)
18	고성부의 유학 최규진을 조용(調用)하다(『고종실록』 8권, 8년 9월 15일 임인)
19	고성부에서 바치는 군포를 돈으로 대납하게 하다(『고종실록』 10권, 10년 9월 23일 무진)
20	고성읍을 통영으로 옮긴 후의 문제에 대해 보고하다(『고종실록』 11권, 11년 4월 5일 정사)
21	고성의 소재지를 환읍하는 문제를 논의하다(『고종실록』 11권, 11년 6월 9일 경진)
22	통제사 이주철이 고성읍을 옮기는 문제를 보고하다(『고종실록』 11권, 11년 7월 30일 경오)
23	고성을 읍으로 만드는데 필요한 비용을 내주게 하다(『고종실록』 11권, 11년 8월 16일 병술)
24	고성을 읍으로 옮기는데 필요한 물자를 내주게 하다(『고종실록』 11권, 11년 9월 16일 을묘)
25	암행어사의 계에 따라 고성군수 이국녕 등을 파직하다(『고종실록』 11권, 11년 11월 28일 정묘)
26	시관 정원하를 고성현에 유배하다(『고종실록』 17권, 17년 3월 3일 경오)

27	고성 전 부사 이병익 등을 가두도록 하다(『고종실록』 19권, 19년 6월 15일 기사)
28	탐오한 일로 고성의 사건과 관련하여 도백이 보고하다(『고종실록』 19권, 19년 10월 6일 기미)
29	암행어사 이헌영의 서계에 의거 고성 전 부사 이병익 등에게 죄를 주다(『고종실록』 20권, 20년 6월 19일 정묘)
30	고성부의 세곡을 팔아먹은 선주를 처벌하도록 하다(『고종실록』 21권, 21년 9월 3일 갑진)
31	고성부의 공물을 횡령한 김영주를 효수하다(『고종실록』 21권, 21년 12월 9일 기묘)
32	의정부에서 고성 등지의 조세 납부 기간 연장을 요청하다(『고종실록』 23권, 23년 10월 18일 정축)
33	고성 등 재해를 입은 지역에 홀전을 베풀다(『고종실록』 28권, 28년 12월 30일 경신)
34	전국을 23부의 행정구역으로 나누는 등 지방제도를 개정하다(『고종실록』 33권, 32년 5월 26일 병신)
35	통영을 고성으로 개정하는 안건 등을 반포하다(『고종실록』 34권, 33년 6월 8일 양력)
36	전보사 관제를 반포하다(『고종실록』 34권, 33년 7월 23일 양력)
37	고성 등지에 진위대를 두는 안건을 반포하다(『고종실록』 39권, 36년 1월 15일 양력)
38	부령 신태휴 등을 파견하여 고성 등지에서 군수 축낸 것을 조사하다(『고종실록』 39권, 36년 11월 18일 양력)
39	고성군 구역 내의 전 통제영 구역을 진남군으로 설치하는 데 관한 안건 등을 반포하다(『고종실록』 40권, 37년 5월 16일 양력)
40	각 도의 관찰사를 소견하여 의견을 수렴하다(『고종실록』 40권, 37년 8월 1일 양력)
41	경상남도 고성 등 전세 감세를 감축하다(『고종실록』 41권, 38년 4월 16일 양력)

참고문헌

『조선왕조실록』

『여지도서』

『고성사료집(제2권)』 (고성문화원, 2010)

『철성지』

『고성군지』 (1995)

집필자 최정용(문학박사, 창원대 사학과 외래교수)